

<차 례>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정보보고서

2023. 12.

본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수행과정에서 통계작성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로 작성기준 시점에 따라 현재의 통계작성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2024.08.22.

I. 통계작성 기획	1
II. 통계설계	8
III. 자료수집	19
IV. 통계처리 및 분석	30
V.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39
VI. 통계기반 및 개선	56

◆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조사의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통계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작성 기획, 통계설계, 자료수집, 통계처리 및 분석,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통계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I. 통계작성 기획

□ 통계개요

- 경제활동인구조사(승인번호 : 제101004호)
-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통계청/고용통계과

1. 조사방법

□ 조사담당자가 각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면접과 동시에 자료 입력(CAPI 이용)

- 희망 적격가구에 대해 CASI 조사
- *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조사로 조사담당자들이 전자기기(모바일기기 등)를 들고 다니면서 조사한 후 조사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기법
- CASI(Computer Assisted Self Interviewing): 인터넷 또는 핸드폰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방법

2. 조사 및 공표주기

- 조사주기: 매월
- 공표주기: 매월

3. 조사일정 및 일정별 수행업무

□ 일정 및 일정별 수행업무

- 기획단계(본청)

표본설계	매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센서스기반 표본 재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표본가구의 1/36씩 연동 교체 • 조사구선정: 1,791조사구 • 표본조사구역선정: 조사구 분할 후 4개 구역 선정 • 표본가구: 4개 조사구역내 거처에 상주하는 모든 가구 • 표본가구 가구명부 작성
조사담당자 교육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요령에 대한 조사 담당자 교육 • 필요시 수시 교육
조사표류 인쇄 및 배부	1월,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청(사무소)에 재고 및 향후 소요분 파악 • 소요량(부재가구 등 조사용) 산출 및 인쇄, 배부
전산프로그램 보완 및 개발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대외자료 요청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 조사 및 입력(지방)

준비조사	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가구 전·출입사항 확인 및 변동내역 처리 ⇒ 가구관리명부 보완 등 · 전입가구에 대한 조사협조 당부 · 보조조사표 배부: 조사대상기간 전 또는 조사대상기간
본 조사	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기간: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 · 본조사 기간: 조사대상기간 다음 1주간 · 조사대상가구를 방문하여 조사(CAPI, CASI 등 병행)
자료입력	매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입력 및 내검: 본조사 기간을 포함한 2주간
입력자료 점검	매월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청(사무소)별 총 입력가구수 파악 · 자료 오류 유무 확인 및 보완 · 증감사유 등 확인 (경제활동인구 및 산업별동향 등 파악하여 증감내역 확인)
조사표류 보관	조사 실시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청·사무소 자체 보관 (CAPI, CASI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가구에 대한 조사표)

○ 결과분석 및 공표

결과 분석	매월 5~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인구 및 특성별 취업자, 실업자 동향 등 결과표 작성·분석 · 관련 참고 자료 수집·정리
결과 공표	매월 15일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전국 『고용동향』 보도자료 작성 및 공표 · 시도별 고용동향: 각 지방청에서 작성 및 공표
연보 발간 (본 청)	매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분기 및 연간 통계표 작성 · 전국 및 17개 시도별 통계표 작성 · 판매용 연보 원고 작성, 교정 및 인쇄 · 온라인간행물 발간

4. 통계연혁

일 시	연 혁
1957년	○ '노동력조사'라는 명칭으로 내부무 통계국에서 실시
1961년 7월	○ 경제기획원 통계국에서 실시
1962년 6월	○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로 지정 - 통계법(1962년 1월 15일 공포) 제2조에 의한 지정통계 제4호(경제활동조사)로 지정·고시(경제기획원고시 제3호, 1962.6.1) · '경제활동조사'를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명칭 변경(1962.7.9)
1962년 8월	○ 새로운 표본과 전문화된 조사원에 의하여 시험조사 실시
1963년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현,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방법에 의해 분기마다 연기식(조사표 1매에 여러명 조사) 조사표로 면접조사 실시(15개 항목) ☞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자료수요 증가 및 노동력조사 결함 보완, 정확성 제고 목적임
1969년	○ 1966 인구센서스 조사구 중에서 다목적 표본을 설계하여 표본개편 - 경제활동인구조사, 도시가계조사, 인구동태조사 등 각종 가구조사에서 사용 ☞ 표본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행정편의 및 효율적인 조사 관리를 위함
1980년 1월	○ 다양한 자료생산을 위해 조사항목은 26개로 확대 및 조사표는 단기식(조사표 1매에 한명씩 조사)으로 변경
1982년 7월	○ 조사주기 변경(분기→월) 및 단기식과 연기식 조사표 병행 사용 ☞ 고용구조 변화추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함
1983년 6월	○ 1982년 ILO 권고안 개편에 따라 조사표 전면 보완
1985년 1월	○ 단기식 조사표로 단일화
1987년 1월	○ 조사대상 최저 연령 상향조정(만 14세 → 만 15세) ☞ 국민소득 향상과 중학교 진학률 99% 상회로 인함 ○ 계절적 변동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시 - 전국, 농가 및 비농가 실업률(3개 계열)을 각각 작성 공표
1988년 7월	○ 조사대상 표본 확대(약 17,500가구 → 약 32,500가구) ☞ 조사결과 신뢰도와 지역별 자료이용 및 국제비교 효율성 제고
1989년 10월	○ 1989년 3분기부터 시도별 자료 생산·공표(분기, 년)
1990년 12월	○ 통계청 통계조사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시
1992년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표본개편
1994년 6월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인구추계에 따라 시계열 자료(1989년~1994.5월) 보정
1998년 1월	○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표본개편 및 7차례 전문가회의를 거쳐 조사표 개편 - 급변하는 국내 정세에 따라 산업구조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 고용 사정도 크게 변화됨에 따라 OECD 기준 실업률 등 작성 - 시간제 근로, 파견근로 등 새로운 고용형태 등장 - 지역자료 작성주기 변경(분기별 → 월별) ☞ 지역고용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1999년 1월	○ 자료입력시 에러방지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하여 CAPI 도입 - 3개월 간의 병행 조사(1998.10월~12월)를 시험실시 후 도입

일 시	연 혁
1999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인구추계에 따라 시계열 자료(1991년~1999.5월) 보정 실업률 및 취업자, 실업자 각각에 대해 계절조정자료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률 이외에 다양한 계절조정자료 수요에 부응
1999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항목을 보완하여 조사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전 취업자 및 구직단념자 통계작성관련 연구 검토 결과를 반영
2003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표본개편 입력프로그램 변경(DOS → Windows 기반) 취업시간을 주업과 부업으로 구분, 비경제활동인구 주된 활동 세분화(통학, 취업준비, 쉬었음 등)하는 등 조사표 개편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한 지역 및 연령계층별 인구추계를 기준으로 시계열 자료(1991년~2002.12월) 보정 성/연령별(15~24세, 25세이상) 취업자, 실업자 계절조정(8개 계열)
2004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트북을 이용한 전자조사(CAPI)에서 PDA 방식으로 변경 응답자의 응답부담과 표본전면 개편에 따른 연동표본 시험조사 실시
2004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계단위를 천단위에서 백단위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3년 1월 이후 자료를 백단위로 보정
2005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표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항목의 보다 나은 의미전달을 위해 질문어구 수정 선택항목 분리 또는 추가(육아와 가사의 분리, 심신장애 추가) 연동표본제 전국적으로 도입
2005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식실업률 작성기준 변경(1999년 6월 자료부터 소급하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기간 1주」 → 「구직기간 4주」
2006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표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항목 소분류 단위로 조사, 혼인상태 사별과 이혼으로 분리 계절조정계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령계층별(10세 간격) 취업자, 실업자 계절조정(12개 계열)
2007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표 수정 및 계절조정계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항목의 보다 나은 의미전달을 위해 질문어구 수정 계절조정계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별 취업자 계절조정(21개 계열)
2007년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표본개편(32,580→32,000가구)
2008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자 관련항목 3개 삭제, 구직경로 및 방법 조사 세분화 등 인터넷조사(CASI)도입 계절조정계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별 취업자 계절조정(9개 계열)
2009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절조정계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계절조정(6개 계열)
2009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면접조사(CATI) 도입
2010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사자 규모별 취업자 공표
2014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바일 CAPI 도입

일 시	연 혁
2014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바일 CASI 도입
2014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조지표 공표(2014년 5월 자료부터 제공)
2015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경제활동인구의 주된 활동상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하였음, 일시휴직, 구직활동, 발령대기, 결혼준비 삭제 일하였음과 무급가족종사자 문항 분리 일시휴직 보기문항의 육아와 가족적이유 구분 평소취업시간 신설 실제취업시간과 평소취업시간의 36시간미만 일한 이유 분리 1주 구직여부 및 원하는 고용형태 삭제 4주 구직활동 문항에서 취업예정자(발령대기자) 문구 삽입 추가 무급가족일에 관한 사항 신설
2015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구조 변동 반영 및 유효표본 확보를 위하여 경기와 제주 조사구 확대(32,000→33,000가구)
2018년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년 7월 이후 자료에 대한 시계열 보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추계자료가 조사기반에 등록기반으로 변경 시도별 자료에 세종시를 추가하여 17개 시도로 공표 세종시 추가 및 유효표본 확보를 위한 강원과 전북 조사구 확대(1,737개 조사구, 33,000→35,000가구)
2019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정도 > 대학이상의 수확여부 및 교육영역 세분화
2021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이상 연령층의 인구, 취업자, 고용률 지표를 '65~69세',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공표(2018년 1월 자료부터 제공)
2022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중사상지위분류 반영을 위한 조사항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예상기간 추가 직장 소유 및 경영(법인대표) 여부 일상적 고용원 존재 여부 가격결정권 보수형태 및 직장(일)의 계약형태 최소근로시간 보장여부 유급견습 여부 추가무급가족종사자 범위 확대(비가족, 임금근로 등) 반영을 위한 조사 문항 변경
2023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층 연령세분화를 위한 조사구 확대(1,791개 조사구, 35,000→36,000가구)
2024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층 연령구간을 세분화하여 공표(2023년 1월 자료부터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취업자, 고용률) 70세 이상 → 70~74세, 75세 이상 (경활(율), 실업(률), 비경) 65세 이상 → 65~69세, 70세 이상

5. 통계의 작성목적

-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그 수행을 위하여 1962년 8월 이후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통계 작성에 관한 ILO 권고안을 준수하기 위하여 ILO 결의안의 변경사항 등을 작성기준과 통계표 문항 등에 반영하여 정부 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주된 활용분야
 - (국무조정실, 국토해양부, 고용노동부, 중기벤처기업부, 교육부)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정책
 - (기획재정부) 자체평가지표, 인구위기대응 정책 수립, 취약계층 지원 정책수립
 -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업 효과 분석,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책 수립, 대상별 취업 지원, 구직자·잠재인력 노동시장 진입 정책, 실업급여 지원대상 현황 및 확대,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정책
 - (보건복지부)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정책

6. 유형별 주요 이용자 관리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정부의 정책수립 및 공공기관의 학술연구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되는 통계로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아래와 같음

[정부부처]

- 기획재정부 : 인구위기대응 정책 수립, 취약계층 지원 정책수립
- 고용노동부 : 두루누리 사업 효과 분석,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책 수립, 대상별 취업 지원, 구직자·잠재인력 노동시장 진입 정책, 실업급여 지원대상 현황 및 확대,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정책
-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기벤처기업부, 교육부 :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정책
- 보건복지부 :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강화 정책

[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보원, 한국개발연구원, 현대·삼성경제연구원 등

7. 이용자 의견수렴

요구사항 및 요구반영 결과

[고령층 연령 세분화 공표]

- (우선제공) 신속한 정책 지원을 위해 신뢰성 확보 자료는 우선 제공
 - 현재의 6차연동 표본으로 통계적 신뢰성이 확보되는 자료는 우선 작성하여 '20년 연내에 공표
 - 시계열: 2018년 1월부터 소급 제공

- (표본확대 시험조사 실시) 국통위(사회분과)에 표본확대 안건 상정 및 시험조사 실시
 - (기간) '22. 7월~ 12월
 - (규모) 전국 54개 조사구(읍면부 27개, 동부 27개) 약 1,080가구
- (연령확대) 지표 및 지역별 표준오차 범위를 고려하여 75세이상, 70세이상으로 구분하여 확대 제공
 - 제공시기 : 2024년 1월 고용동향 공표 시('24. 2.16.)

추진연도	(~'20년)	('21~'23년)	('24년 1월)
고령층 연령 구간	65세이상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70세이상 (인구, 취업자, 고용률) 65세이상 (경제활동, 실업률, 비경제)	75세 이상 (인구, 취업자, 고용률) 70세 이상 (경제활동, 실업률, 비경제)
시계열	(~'17년)	('18~'22년)	('23년 이후)

[新중사상지위 측정을 위한 조사표 개편]

- ILO의 국제중사상지위분류 개정(제20차 ICLS 결의안) 및 한국중사상지위분류 개정(2021.12.) 반영을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새로운 중사상 지위 측정필요
- 개정된 중사상지위(2021.12.) 측정을 위해 6개 문항 추가, 2개항목 변경
 - 고용예상기간 추가
 - 직장 소유 및 경영(법인대표) 여부
 - 일상적 고용원 존재 여부
 - 가격결정권
 - 보수형태 및 직장(일)의 계약형태
 - 최소근로시간 보장여부
 - 유급전습 여부
 - 추가무급가족종사자 범위 확대(비가족, 임금근로 등) 반영을 위한 조사 문항 변경

II. 통계설계

1. 조사항목

1-1 주요 용어 및 항목별 정의

- 주요 용어(개념)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의함
-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의 합계
- (취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또는 동일가구내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또는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미만인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이 가능한 자
- (실업자)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
-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 (잠재취업가능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 (잠재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

1-2 국제 작성기준과 비교

[명칭: 경제활동인구조사]						
구분	한국	국제 권고안 (기구명)	비교가능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	EU
통계명	경제활동인구조사	Labor Force Survey (ILO)	Current Population Survey	Labor Force Survey	Labor Force Survey	Labor Force Survey
조사대상	15세 이상 인구	15세 이상 인구	16세 이상 인구	15세 이상 인구	15세 이상 인구	15세 이상 인구
조사에서 제외된 인구	사회복무요원, 해외상주 취업(학)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	시설가구내 거주자	시설가구내 거주자, 직업군인	Indian Reserves 지역민, 직업군인, 시설가구내 거주자	외국외교관, 외국군인 및 그 가구원	시설가구내 거주자 (일부국가)
대상주간	매월 15일이 포함된 한주간	매월 15일이 포함된 한주간	매월 12일이 포함된 한주간	매월 15일이 포함된 한주간	매월 말일을 포함한 한주간	회원국마다 상이
현장업무기간	조사대상주간 다음주					
면접대상자	15세이상 모든 가구원	15세이상 모든 가구원	16세이상 모든 가구원	15세이상 모든 가구원	15세이상 모든 가구원	15세이상 모든 가구원
표본규모	36,000가구	국가마다 적정 표본 규모이상	60,000가구	약55,989가구	약 40,000가구	회원국마다 상이

작성 주기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매월	3개월단위 (매주 조사)
조사 방법	직접 방문조사, 인터넷 응답 (CASI) 등	직접 방문조사, 인터넷응답(CAS), 전화통화조사(CATI) 등	직접 방문조사, 인터넷응답(CAS), 전화통화조사(CATI) 등	직접 방문조사, 인터넷응답(CAS), 전화통화조사(CATI) 등	면접 타게식과 자기식 병행 (OMR, OCR)	직접 방문조사, 인터넷응답(CAS), 전화통화조사(CATI) 등

1-3 조사표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

1-4 조사항목의 체계

구분	해당 항목
인적사항 (5개)	1. 가구주와의 관계 2. 성별 3. 생년월일 4. 교육정도(학력및계열, 수학여부) 5. 혼인상태
일에 관한 사항 (23개)	6. 일하였음 7. 무급가족종사자 8. 일시휴직 및 이유 9. 주업과 부업 10. 평소취업시간 11. 평소 36시간미만 일한 이유 12. 실제취업시간 13. 실제 36시간미만 일한 이유 14. 추가취업희망 15. 추가취업가능성 16. 추가취업구직활동 17. 산업 18. 종사자규모 19. 직업 20. 종사상지위 21. 현직장 취업시기 22. 고용계약여부·기간 23. 직장 경영·소유 여부 24. 일상적인 고용원 존재 여부 25. 가격결정권 26. 보수형태 및 직장(일)의 계약형태 27. 최소근로시간보장여부 28. 유급근습여부
구직에 관한 사항 (4개)	29. 4주구직활동 30. 취업가능성 31. 구직방법 및 경로 32. 구직활동기간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 (5개)	33. 취업희망 36. 1년내 구직경험	34. 취업가능성 37. 주된 활동상태	35. 비구직이유
이전 직장(일)에 관한 사항 (6개)	38. 취업경험 및 시기 40. 이전 산업 42. 이전 직업	39. 직장을 그만둔 이유 41. 이전 종사자규모 43. 이전 종사상지위	
추가 무급가족일에 관한 사항 (11개)	44. 추가 무급가족종사자 여부 45. 평소취업시간 47. 실제취업시간 49. 추가취업희망 51. 추가취업구직활동 53. 종사자규모	46. 평소36시간미만 일한 이유 48. 실제36시간미만 일한 이유 50. 추가취업가능성 52. 산업 54. 직업	

1-5 주요 조사항목의 조사 목적

조사항목		조사목적
조사표 표지	승인번호	제101004호
	통계법 명시	통계법 제 32조(성실응답의무), 33조(비밀의 보호)에 관한 사항 안내
	조사목적 안내*	조사 목적, 성실 응답에 대한 안내
	관리사항 등	표본 관리 사항, 가구원 현황, 조사방법 등 기입
	조사 기관 명시	통계청 조사
기본항목	1-5.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혼인상태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분석 시 각종 지표의 특성 항목으로 활용
일에 관한 항목	6. 취업여부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파악 하는 항목
	7. 무급가족 종사자 여부	자신이 아닌,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파악하는 항목 (취업자를 누락시키지 않기 위한 확인항목)
	8. 일시휴직여부 및 이유	직장이 있는 일시휴직자를 파악하여 취업자로 구분하기 위한 항목
	9. 부업여부	취업자의 주업, 부업 여부 및 평소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항목
	10. 평소근로시간	
	11. 평소 36시간 미만 취업사유	취업자의 평소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 사유를 파악
일에 관한 항목	12. 취업시간	주업, 부업을 구분하여 취업시간을 파악
	13. 지난주 36시간 미만 취업사유	
	14. 추가취업 또는 전직희망 여부	현재 하고 있는 일 외에 추가 취업을 희망자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불완전취업 현황분석시 이용
	15. 추가취업 또는 전직가능상시기	
	16. 추가취업탐색여부	
일에 관한 항목	17. 산업	취업자분석의 중요 특성인 산업과 직업을 파악하는 항목으로 산업·직업별 취업현황, 구조 및 동향 파악 가능
	18. 종사자 규모	
	19. 직업	
	20. 종사상 지위	임금, 비임금근로 여부를 판단하고 일자리에서의 근로기간과 근로복지혜택을 고려한 종사상지위를 파악하고자 함

구직에 관한 항목	21. 현 직장 취업시기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을 파악하기 위한
	22. 고용계약여부기간	임금근로자의 근로기간 계약여부 파악하는 항목으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와 함께 비정규직 규모 분석 시 활용됨
	23. 직장 경영-소유여부 ²	ILO의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정에 따른 신종사상지위를 측정하여 다양한 고용 형태 파악
	24. 일상적인 고용원 존재 여부	
	25. 가격결정권	
	26. 보수형태 및 직장(일)의 계약형태	
	27. 최소근로시간보장여부	
	28. 유급견습여부	
29. 4주간의 구직여부	구직활동은 실업자의 중요요건으로 취업자가 아닌 사람중 실업자를 가려내기 위한 항목	
기타활동에 관한 항목	30. 취업가능성	실업자 성립조건 중 하나인 즉시 취업 가능성을 측정하는 항목임
	31. 구직경로 및 구직방법	적극적인 구직활동 내용과 구직활동의 행태를 파악하기 항목
	32. 구직활동기간	실업자의 구직기간을 파악하기위한 항목으로 장기실업 여부 파악 가능
이전 직장(일)에 관한 항목	33. 취업희망 34. 취업가능성 35. 비구직이유 36. 1년내 구직경험	취업도 실업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임
	37. 주된 활동상태	비경제활동인구의 주된 활동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
추가무급	38. 취업경험 및 시기 39. 직장을 그만둔 이유	현재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전에 일을 한 경험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항목으로 1년미만 전직자에 대해서는 이직 이유를 파악하며, 이를 통해 비자발적 이직자 현황 파악이가능함
	40. 이전 산업 41. 이전 종사자 규모 42. 이전 직업	1년미만전직자 분석의 중요 특성인 산업과 직업을 파악하는 항목으로 산업·직업별 취업현황, 구조 및 동향 파악 가능
	43. 이전 종사상지위	1년미만 전직자의 임금, 비임금근로 여부를 판단하고 일자리에서의 근로기간과 근로복지혜택을 고려한 종사상지위를 파악하고자 함
	44.~54. 추가무급가족일 관련	취업자가 아닌 무급가족종사자에게 추가 무급가족일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는 항목

2. 적용 분류체계

□ 분류 체계

- 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2017년) 기준(2013년 자료부터 소급 적용)
 - (분류목적)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통계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국가 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
 - (부호체계) 분류는 대분류 21개, 중분류(77개), 소분류(232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대분류로 공표 중
 - (분류개정) 1963년 3월 경제활동 중에서 우선 광업과 제조업 부문에 대한 산업분류를 제정하였고, 1964년 비 제조업부문에 대한 산업분류를 추가로 제정하였으며, 국내 산업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그동안 9차례에 걸쳐 개정한 바 있으며, 제10차 개정분류를 고시(2017년 7월)
- 직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개정(2017년) 기준(2013년 자료부터 소급 적용)
 - (분류목적) 직업분류는 직업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모든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하여 통계자료의 일관성과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통계를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기초로 작성
 - (분류원칙) ① 주된직무 우선원칙, ② 최상급 직능수준 우선원칙, ③ 생산업무 우선원칙 * (다수직업종사자) ① 취업시간 우선, ② 수입 우선, ③ 최근 직업 원칙 순
 - (분류구조) 대분류(1자리 숫자), 중분류(2자리) 등 5단계로 구성되며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대분류로 공표 중
 - (분류개정) ILO 국제표준직업분류(ISCO-58)가 1958년 제정되어 각국에 사용토록 권고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1963년에 제정되었으며, 7차 직업분류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 교육분류: 한국표준교육분류(2016년) 기준(2019년이후)
 - (작성목적) 교육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집계, 분석에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국·내외 교육통계 자료 간에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고, 교육 관련 인구 동향의 파악, 교육에 투자하는 인적·재정적 자원의 효과적 배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장·단점 진단, 해외 우수 교육 정책과 제도의 벤치마킹 등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작성
 - (분류기준) 교육수준 부문과 교육영역 부문
 - (분류개정) 2009년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1997)를 기반으로 '한국교육분류'를 일반분류로 제정하고, '한국표준교육분류(수준)'(2015년1월), '한국표준교육분류(영역)'(2018년 1월 시행)

3. 조사표 구성

3-1 조사표 구성 관련 내·외부 전문가 회의 및 반영여부

□ 제19차 ICLS 결의안 반영을 위한 조사표 재설계(2014년)

- (조사방법) 고용보조지표 작성 등을 위해 모든 표본에 대해 현행 및 신규조사표를 작성
 - 일부 가구*를 선정하여 신규조사표를 이용하여 면접조사 실시

* 32,000가구 중 2,000가구(7,533가구원)를 임의 선정(표본과에서 추출)

- (반영) 조사결과 및 의견수렴결과를 검토하여 신규조사표 보완

- (보완 내역)

- 7번(무급가족종사자)와 문44번(추가 무급가족종사자)의 구분 ⇒ 문구 보완

【기존】 지난 주에, 함께 사는 가족의 일을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신규】 지난 주에,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	--

- 문6번(취업여부)와 문7번(무급가족종사자)의 구분 ⇒ 조사지침에 명시

(조사지침) 무급으로 가족의 일을 한 경우 ○ 문6번(취업여부)에서 '2.아니오' → 문7번(무급가족종사자)에서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농장)에서 무급으로 일한 경우'에만 '1.예'에 해당 ⇒ 문6번(취업여부)은 자신이 임금을 받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농장)의 이윤을 얻기 위해 일한 경우에 '1.예'에 해당

- 1~17시간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제활동상태 구분 ⇒ 조사지침에 명시

(조사지침) 1~17시간 무급가족종사자가 '②0~35시간'에 체크되지 않도록 유의 ○ 문12번(실제 취업시간)에서 '①1~17시간 무급가족종사자' 여부를 먼저 확인
--

□ 제19차 ICLS 결의안 반영을 위한 조사표 변경 승인(2015. 1. 15)

- (배경) 국제노동기구(ILO)가 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2013.10.)를 통해 고용통계작성 기준을 개정, 일의 범위 구분, 무급가족종사자의 취업자 인정 범위 확대, 실업자의 구직활동기간 명확화, 취업가능성 개념의 구체화, 고용보조지표 정의 도입 등을 마련함
- (변경 이유) 평소 취업시간 측정, 확대된 무급가족종사자의 시계열 추적, 지난주 주된 활동상태 항목의 유용성 제고, 통계이용자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일·가정 양립 파악을 위한 보기항목 분리 등
- (변경 내용)

조사항목*	구분	기존 조사표	신규 조사표	변경사유
지난주 주된 활동 상태 (문7번)	보기 삭제	1.일하였음-4.발령대기	삭제	개별 문항으로 파악
	문항 이동	5.육아-17.기타	비경제활동인구 문항으로 이동(문31번)	항목의 유용성 제고
	보기 삭제	15.결혼준비	삭제	자료 활용도 및 규모 고려
취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문8번)	문항 분리	지난 1주간, 1시간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무급으로 가구원의 일을 조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문6번) 지난 주에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문7번)	이중질문의 문항 분리
일시휴직 사유 (문9번)	보기 보완	13.교육	③교육훈련(문8번)	보기 구체화
	보기 분리	14.육아가족적이유	④육아 ⑤가족적 이유	일·가정양립 관련 참고 항목

1주 구직여부 (문10번)	문항 삭제	1주 구직여부	삭제	국제기준 반영 -실업자의 구직기간이 4주(또는 1개월)로 확정됨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문15,16,17번)	문구 보완	지난주에 일하는 시간을 늘리기 원하셨습니까? 또는 다른 일을 더하거나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다른 직장(일)으로 바꾸기 원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셨습니까?(문14번)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Time-related Underemployment)에 대한 국제기준을 문항에 구체적으로 명시
		일을 더하거나 다른 직장(일)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했습니까?	지난 주에 일이 더 주어졌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습니까?(문15번)	
		지난4주내에 다른 직장(일)을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지난4주 동안 더 많은 시간 일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을 더 찾아보거나 다른 일(직장)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문16번)	
평소 취업시간 (문13-1번)	문항 순서 변경	실제→평소 취업시간	평소→실제 취업시간 (문10번)	실제 취업 시간의 정확성 제고
취업가능성 대상기간 (문16-1, 18-1,23-1번)	문항 삭제	이번주 또는 다음주에 취업가능 여부	삭제	취업가능성 대상기간을 '지난 주'로 조사
구직방법 (문19번)	보기 추가	21.시험응시	11.시험접수, 시험응시 15.친척,친구,동료에게 부탁 (문25-1번)	보기 구체화
취업가능성 (문18,23번)	문구 변경	취업가능성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취업 시작가능성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문23, 28번)	국제기준 반영 -취업 시작가능성으로 질문이 구체화됨
구직방법 (문19번)	보기 추가	21.시험응시	11.시험접수, 시험응시 15.친척,친구,동료에게 부탁 (문25-1번)	보기 구체화
원하는 고용형태 (문21번)	문항 삭제	원하는 고용형태	삭제	자료 활용도 및 변동성 고려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가능성 (문23번)	문항 분기 변경	'2.없었을'으로 응답시 문20번(전직여부)으로 분기	(문28번) '2.없었을'으로 응답시 (문29번)비구직사유로 이동	취업가능성 유무에 상관없이 비구직사유를 파악
직업분류 (문29번)	코드레벨 축소	세분류 조사	중분류까지 조사 (문19,26,48번)	표준직업분류 개정 완료 -표준직업분류 개정시 참고자료로 세분류자료 활용
유급가족 종사자 (문33번)	문항 삭제	유급가족종사자 파악	삭제	가족종사자에 대한 종사상지위 국제기준 미정(제20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에서 논의 예정)

추가 무급가족종사자 (문80-87번)	문항 조정	'취업자' 문항(문13-17번,28-29번)과 동일	'취업자' 문항(문10~20번)과 동일(문38~48번)	신규조사표 '취업자' 문항과 동일하게 문항 조정
취업자 산업,직업, 종사상지위	문항 영역 구분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와 조사문항 공유(문28-30번)	취업자 영역과 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영역 분리 (문17-20번, 문33-36번)	경제활동상태별 조사항목간 분기이동 단순화하여 조사표 효율성 제고
산업,직업	용어 보완	-사업체의 주된 활동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용어의 이해도 제고
부업여부		-일의 종류 -주업, 부업	-내가 한 일 -주된 일, 다른 일	

3-2 조사표에 수록된 사항

- 통계조사명, 조사목적, 조사기관 명시, 국가승인통계 마크, 작성승인번호
- 조사의 법적 근거(통계법 제32조, 제33조), 응답자 비밀보호 정책, 조사 협조 요청
- 조사담당자 연락처
- 조사표 주요 용어정의 및 기준

4. 조사표 설계 및 변경 절차나 방법

- 조사표 변경사항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토
 - 지방청 업무담당자로부터 조사 시 문제점 등 의견 수렴
 - 본청 실무자 회의업무담당자 내부 회의를 통해 집계 및 분석 시 문제점 등 검토
- 조사표 표준화 가이드라인 준수
 - 국가승인 통계마크, 통계청 CI, 조사표명, 법적근거, 감사인사말, 홈페이지 주소 등 수록항목별 문구, 위치, 크기, 규칙 등 조사기획과의 조사표 표준화 가이드라인 준수
- 조사표 변경 확정
 - 조사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통계청장(사회통계심사조정과)의 승인이나 협의 필요
 - 변경 승인 신청은 조사·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20일전까지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10일전까지 가능 (통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항)
 - *통계정책관리시스템(<http://narastat.kr>)에 신청

5. 조사표 변경 이력

-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표 변경이력
 - 2022년: 신종사상지위 측정을 위한 조사항목 신설 및 변경(48문항 -> 54문항)
- 조사표 변경이유 및 내용
 - ILO는 고용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제20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18년)에서 국제종사상지위분류(ICSE-93)를 25년 만에 개정
 - 통계청은 국제분류를 반영한 한국종사상지위분류를 개정 완료('21.12.)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새로운 종사상지위를 측정하여 현실 반영도를 제고

조사항목		조사목적
일에 관한 항목	23. 직장(사업체)의 소유 및 경영	新중상상지위 분류 파악(신설)
	24. 일상적 고용원 유무	新중상상지위 분류 파악(신설)
	25. 가격결정 권한	新중상상지위 분류 파악(신설)
	26. 보수형태 26-1. 지난주 직장(일)의 계약형태	新중상상지위 분류 파악(신설)
	27. 최소 근로시간 보장여부	新중상상지위 분류 파악(신설)
	28. 유급 견습 여부	新중상상지위 분류 파악(신설)
	22. 고용계약여부 (고용계약기간, 총고용예상기간)	고용계약기간 세분화 및 고용예상기간 추가(변경)
기타활동에 관한 항목	44. 비취업자의 추가 무급가족일	추가무급가족종사자의 포괄범위 변경 (비가족 동거인의 일을 함께 하는 경우도 포함)

- 변경승인일자 기록·관리
 - 2022년 7월 12일 통계청고시 제2022-268호(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2.7.6.)

6. 목표모집단과 조사모집단

6-1 목표모집단의 정의

- 목표모집단 : 대한민국에 상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모든 사람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아파트 조사구에 거주하는 인구가 54.2%로 가장 많고, 보통 조사구 42.0%, 섬 조사구 0.2%로 나타났으며, 기숙/사회시설에는 1.9%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21년 등록센서스 기준)

6-2 조사모집단의 정의

- 조사모집단 : '21년 기준 등록센서스에 포함된 만 15세 이상 모든 사람
 - 병영(군대), 병원, 교도소 등 특수시설 거주자와 불법체류자는 조사모집단에서 제외하며, 등록센서스 조사구 정보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도 제외

7. 조사모집단(전수조사) 또는 표본추출틀(표본조사)

7-1 표본추출틀로 사용되는 자료의 출처

- (표본추출틀) 통계청의 '21년 기준 등록센서스 및 인총 표본조사 등을 기초로 구축된 최신 표본추출틀을 활용, 그간 모집단 변화를 반영하여 표본 대표성을 제고

- 목표모집단: 대한민국에 상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모든 사람
- 조사모집단: '21년 기준 등록센서스에 포함된 만 15세 이상 모든 사람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등 시설조사구 내 집단 가구 제외

7-2 표본추출틀로 선정된 이유

- 등록센서스는 우리나라의 농림어가를 포함한 모든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구 및 주택에 대한 특성 정보가 제공되어 사회통계의 가구표본추출틀로 사용하기에 적합

7-3 표본추출틀의 구축(갱신) 주기, 방법 및 절차, 결과

□ 연동 표본 체계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 개편으로 인한 시계열 단절 방지를 위해 2005년부터 연동표본(rotation sample)을 도입하였으며, 2024년부터 8차 연동 표본 적용
 - 매월 전체 표본의 1/36이 교체되며, 전월 대비 97.2%, 전년 대비 66.7% 중복

<표 II-1> 연동표본 개편 연혁

	4차 연동	5차 연동	6차 연동	7차 연동	8차 연동
연동표본 교체시기	2013. 1.	2016. 1.	2018. 1.	2021. 1.	2024. 1.
표본 추출틀	2010년 인총 +신축조사구(11년)	2010년 인총 +신축조사구(14년)	2015년 등록센서스	2018년 등록센서스	2021년 등록센서스
표본규모 (조사구)	1,629개	1,647개 (경기, 제주 각 9개 확대)	1,737개 (세종 54개 강원 18개 전북 18개 확대)	1,737개	1,791개 (세종, 경기, 충남, 전북, 경남, 제주 각 9개 확대)

□ 최신 모집단 반영

- 2021년 등록센서스 자료와 20% 인총 표본조사 자료 활용
 - 6차 연동부터 등록센서스 기반 표본추출틀 활용하여 최신 모집단 특성 반영
 - 행정자료 기반 전수자료(주소, 거처, 가구·인구 DB)와 최신 인총 표본조사 자료를 주소(거처) 단위로 연계 및 공유*하여 표본추출틀 구축
 - * 2021년 기준 가구부문 표본추출틀 구축결과 보고(표본과-717, 2023.4.7.) 참조
- 모집단 변화를 적시 반영하기 위해 매년 표본 추출
 - 등록센서스 기반 표본추출틀을 활용한 6차 연동부터 매년 표본조사구 추출
 - 1년 동안 전체 표본의 1/3이 교체되며, 2024년에는 597개 조사구 진입 예정 (8차 연동 4~6그룹)
 - 연동표본 개편 이후 3년 동안은 표본설계 및 추출 방법 유지
 - 층화 기준, 표본규모, 설계층별 분류지표(정렬번호)를 동일하게 적용

8. 표본설계 방법 및 결과

□ 표본설계

- (연동표본체계) 표본 개편으로 인한 시계열 단절 방지를 위해 2005년부터 연동표본(rotation sample)을 도입하였으며, 2024년부터 8차 연동 표본 적용
 - 매월 전체 표본의 1/36이 교체되며, 전월 대비 97.2%, 전년 대비 66.7% 중복
 - 모집단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3개 그룹의 표본을 최신 표본추출틀에서 추출
- (표본규모) 1,791개 조사구(조사구당 평균 20가구)로 전국 약 36,000가구
 - '21년 7차 연동 개편 시 6차 연동과 동일한 표본규모(1,737개 조사구)를 유지하였으나, '23년부터 54개 조사구 확대(1,791개 조사구)
- (층화) 공표수준과 6차 연동과의 시계열 유지를 위해 동일한 층화기준 적용
 - 17개 시도로 층화한 후, 세종시 및 도 지역은 행정구역(동·읍·면·부) 구분(27개층)
- (추출방법) 층화 2단 집락계통추출(Two-stage Cluster Systematic Sampling)
 - 1차 추출단위: 조사구, 확률비례계통추출(가구 수 크기 비례)
 - 2차 추출단위: 가구, 표본 조사구 내 단순임의추출

□ 표본 추출방법

- 층화 2단 집락 계통추출(Two-stage Cluster Systematic Sampling)
 - 1차 추출단위: 조사구, 확률비례계통추출(가구 수 크기 비례)
 - 2차 추출단위: 가구, 표본 조사구 내 단순임의추출
- 모집단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체 표본의 1/3 추출(597개 조사구)
 - 매년 3개 그룹의 표본 조사구가 교체되며, '24년에는 8차 연동 4~6그룹 진입
- 3개 그룹의 표본이 동질적인 분포를 갖도록 배분
 - 설계층 내에서 지역, 거주유형, 등록 고용률과 분류지표의 분포가 그룹별로 유사한 분포를 갖도록 재추출하여 그룹 배정(Cube Method* 이용)
 - * Cube method(Deville & Tille, 2004)는 보조변수들에 대한 HT 추정량이 모집단과 일치하도록 근사적인 균형표본을 찾는 방법으로 최대 40개의 보조변수 활용 가능

9. 표본관리

□ 표본설계

- 가구표본 관리지침서(표본과, 2023)에 의거한 표본관리 실시
 - (조사구 관리방법) 표본가구에 조사협조 공문, 홍보물 및 답례품 등을 제공하여 응답가구의 협조를 구하고, 조사원들에게는 표준화된 교육을 통한 조사방법 개선
 - (표본교체) 연동표본의 경우, 응답자의 응답부담 완화와 표본의 노후화 현상 및 전면 표본 개편에 따른 신규 계열 괴리 현상 감소를 위해 약 900가구를 매월 교체하고, 과대 및 과소조사구, 과소구역조사구 발생 시 지방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조사구 조정하고 있음

Ⅲ. 자료수집

1. 조사방법

□ 조사기간

- (조사대상기간) 조사대상기간(15일이 포함된 1주간: 日~土)
-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간 다음 1주간

□ 조사과정

- (준비조사)
 - 조사대상가구 전·출입사항 확인 및 변동내역 처리
 - 전입가구에 대한 조사협조 당부
 - 조사대상기간 전 보조조사표 배부
- (본조사)
 - 조사담당자별 본조사 (조사대상기간 다음 1주간)
 - 가구를 직접 방문 면접조사와 태블릿PC 입력
 - 전자(CASI, mCASI), 전화, 자기기입식조사
- (자료입력 및 점검)
 - 본조사 기간을 포함한 2주간 자료입력 및 내검
 - 자료 오류 유무 확인 및 보완
 - 조사실시 후 조사표류 등 보관(CAPI, CASI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가구에 대한 조사표)
- 조사불응, 장기부재 등에 대한 대응방법
 -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17조(조사불응·불응 대처) 및 경제활동인구조사 불응가구 관리지침 [부록4]에 따라 불응대상처 관리
 - 가구원 불응 및 문항 불응은 인정하지 않음
 - 응답가구 부재로 인해 해당 월에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도 전자조사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 3개월 이상 부재이거나 3개월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장기부재로 간주하여 전출처리

□ 조사방법

- (기본원칙) 조사담당자가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과 동시에 자료 작성
 - (조사방법) 조사표, CAPI¹⁾, 희망 적격가구* 인터넷/모바일 CASI²⁾ 가능
 - * 조사 6개월 이상 응답가구로 가구변동이 없이 안정적이며, 가구사항이 충분히 파악된 가구 중 CASI를 희망하는 가구. 단, 6개월미만이라도 면접이 불가능하거나, 협조도가 좋은 경우 선정 가능

1)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태블릿을 이용한 면접조사로 조사담당자들이 태블릿 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조사한 후 조사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기법

2) CASI(Computer Assisted Self Interviewing): 인터넷을 이용한 자기기입식 조사방법

2. 조사원 채용 및 처우

□ 조사원 구분

- 일반직(행정직, 통계직) 공무원: 지방청 및 사무소 총괄, 자료 내검, 조사 지원, 현장조사
- 통계조사관(공무직): 현장조사, 조사표 작성 및 내용검토, 자료 입력 등
- ※ 공무원, 공무직 공백 발생 시 한시적으로 기간제 채용

□ 조사원 채용방법 및 과정

- 경찰 병행조사 등 추가 업무발생 시 한시적으로 기간제 채용
 - 경상조사 외 추가적인 업무발생에 필요한 임시조사원 채용
- '나라시스템'을 통해 채용공고 → 조사원 모집 → 채용
 - 사업체 배정 등 시행(지방청별 상황에 맞게 지방청에 위임)

□ 자격요건, 급여수준 및 지급방법, 부가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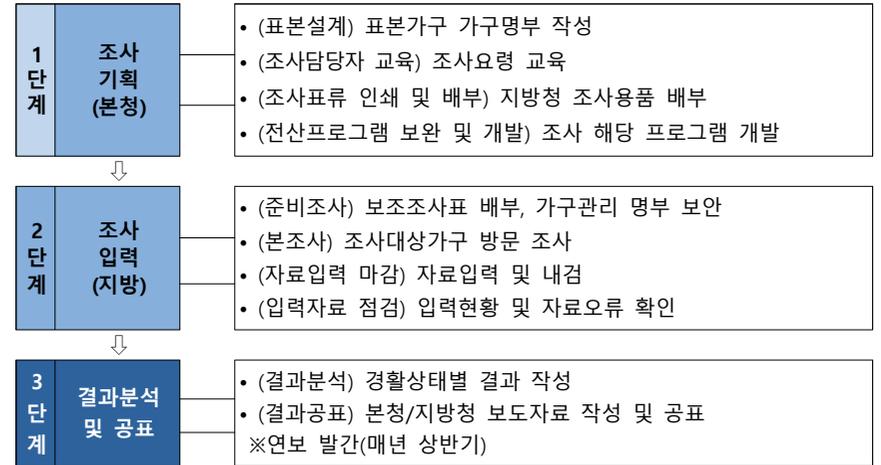
- 조사원 자격요건
 - 조사지역 내의 거주자로서 조사기간 중 업무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가구 통계조사 또는 관련 업무 유경험자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등 해당업무의 수행이 원활한 자
- 조사원 급여수준 및 지급방법
 - 도급금액은 당해연도 기준금액에 따름
 - 수당지급은 통계청이 조사표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분의 도급금액을 내용확인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3. 조사원 교육훈련

□ 조사원(조사관리자 포함) 교육훈련 과정

- 교육훈련 일정 및 시간
 - 집합교육: 사무소 방문교육 및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e러닝): 연중 수시 교육(6시간)
 - ※ 매년 1월경 지침서 및 사례집 교육내용 수정 반영
 - 매월 고용통계과 -> 지방청 총괄자를 통한 전달교육 실시
- 교육훈련 내용
 - 조사대상 및 단위, 일정 등 조사운영의 개괄적 내용
 - 조사방법 및 불응 등 특이사항(유의사항 등)
 - 현장조사 요령, 자료 작성방법
 - 자료 입력 및 조사 사례별 처리방법
 - 기타(내검 방법 등)

4. 조사업무 흐름도



5. 조사준비 및 준비조사

□ 조사홍보

- 홍보용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경제활동인구조사 홍보 및 조사협조 유도
 - 전자조사방법(CASI) 이용방법 안내

< 리플릿 이미지 >



□ 응답자 사전통지 실시 여부

- 신규조사가구 및 전입가구인 경우 협조공문 제시를 통한 조사협조 당부
- 매월 조사 시, 가구 방문 전에 응답자에게 방문일시와 목적을 안내
 - 방문 시에는 통계청장 명의의 조사안내문, 홍보용 리플릿을 지참하여 조사 목적 및 활용 등 설명을 통해 조사협조를 유도

6. 조사항목별 조사 방법

<일에 관한 사항>

6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7 지난주에,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1. 예 → (9 번으로) 2. 아니오	1. 예 → (9 번으로) 2. 아니오

자신의 수입 있는 일

지난주(日~土)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파악하는 문항

☞ 『6 일하였음』에서 자신이 임금을 받거나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농장)의 이윤을 얻기 위해 일했던 사람은 「1. 예」에 해당함

☞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농장)에서 무급으로 일한 사람은 「2. 아니오」로 응답하고 『7 무급가족종사자』로 이동

☞ 가정주부, 학생, 장애자, 연로자라고 해서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됨

. 일반적으로 취업자라고 하면 대기업에 다니거나 자기사업을 하면서 주 5일이상 근무를 하는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ILO 기준에 따르면 근로형태를 가리지 않고 수입을 목적으로 1주간 1시간 이상 일했다면 모두 취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음

가족의 무급일

☞ 『7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신이 아닌,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했던 사람을 파악함

☞ 『VI 추가 무급가족일에 관한 사항』에서 44 문항 이하 '추가 무급일'의 범위가 확대(대상, 일의범주, 일한시간)된 것과는 구분됨을 유의

	무급가족종사자 (※ 취업자, 7 문항)	추가 무급가족종사자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44 문항)
가족의 범위	동거(함께 사는) 가족	동거·비동거 가족, 비가족 동거인
일의 범주	자영업 일	자영업 일, 임금근로 일
일한 시간	1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자가사용 또는 자가소비만을 위한 일은 『6 일하였음』과 『7 무급가족 종사자』 문항에서 「2. 아니오」에 해당됨 (예: 자기집 짓기, 텃밭 가꾸기 등)

☞ ILO 국제기준(2013.10월)에 따라 취업(employment) 개념이 변경됨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8 지난주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 (29 번으로)

8-1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시적 병, 사고
- ② 휴가·연가
- ③ 교육·훈련
- ④ 육아
- ⑤ 가족적 이유
- ⑥ 노사분규
- ⑦ 사업부진·조업중단
- ⑧ 기타() → (10 번으로)

일시휴직여부 및 이유

☞ 『6 일하였음』과 『7 무급가족종사자』에서 파악된 취업자 외에도

일시휴직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 『7 무급가족종사자』의 「2. 아니오」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확인함

☞ 『8-1 일시휴직 사유』①~⑧에 해당되는 사람만 일시휴직자임

조사대상주간에 일시적 이유(자신이나 가족의 병 등)로 직장 또는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 일시휴직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직장에 복귀 가능해야 함

☞ 노동쟁의 때문에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도 포함

유급 휴직자는 '유급' 자체가 복귀가 확실한 것으로 간주되어 휴직기간에 관계없이 일시휴직자로 처리함

☞ 무급 휴직자의 경우 복귀가 확실하면 일시휴직으로 처리하지만, 무급휴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 일시휴직자로 보지 않음

일시휴직인 상태에서 추가로 무급가족일을 한 경우 무급가족일의 실제취업시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짐

☞ 무급가족일의 실제취업시간이 1~17시간이면 무급가족일 자체가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일시휴직자로만 분류되므로 『7 무급가족종사자 문항은』 「2. 아니오」에 해당

☞ 무급가족일의 실제취업시간이 18시간 이상이면 무급가족일이 취업으로 인정되어, 일시휴직자가 아닌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되므로 『7 무급가족종사자 문항은』 「1. 예」에 해당

※ 무급가족종사자는 복귀할 직장이 인정되지 않아 일시휴직자가 될 수 없음

<실제 취업시간>

12 지난주에 실제 몇시간 일하였습니까?

1. 주된 일 : 시간

2. 다른 일 : 시간

3. 총계 : 시간

① 1 ~ 17시간 무급가족종사자→(29 번으로)
 ② 0 ~ 35시간→(13 번으로)
 ③ 36시간 이상→(17 번으로)

실제 취업시간

조사대상주간 중에 실제로 일한 시간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

☞ 준비조사 때 배포한 보조조사표 상에 매일 일한 시간을 합산 기입

◇ 실제 취업시간 결정기준

- . 자기 직무를 다하기 위하여 보낸 시간
- . 정규근무시간 이외 초과근무시간도 포함
- . 가족이 경영하는 농업, 상점 등의 일을 도운 시간
- . 조사대상주간 중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 0.5시간(30분)이상은 반올림하여 한 시간으로 간주

◇ 취업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

- . 식사, 통근소요시간
- . 사적 용무를 본 시간
- . 집안일(가사)에만 종사한 시간
- . 타인을 위해 자발적인 무보수 봉사과 같은 활동에 종사한 시간

주된 일, 다른 일로 나누어 각각에서 실제 일한시간을 기입

임금근로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기직무와 관련해서 일한 시간을 포함

비임금근로자는 자기,가족 사업을 위해 일한 시간을 말하며 실질적인 거래는 없어도 거래를 위해 사업장 밖에서 보낸 시간도 포함

<산업>

17 지난주에 어디에서 일하였습니까?

◆사업체(직장)명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산업

지난주에 일하였던 사업체(직장)명과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을 각각 기입함

◇ 사업체(직장)명

「◆사업체(직장)명」은 줄여서 쓰지 말고 정확히 기입

임금근로자는 직장명을 최하단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입

예) 서울지방 병무청, 서울 북부 수도사업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등

☞ 여러 곳에서 일하거나, 매일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경우

⇒ 일한 곳의 특징을 기입

예) 가사도우미: 남의 가정에서 / 유리창 닦이: 남의 건물에서
비임금근로자는 점포명이나 사업체명을 기입

☞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점포명이나 사업체명이 없는 경우

⇒ 「자기사업」 또는 「가족사업」이라고 기입

◇ 사업체(직장)가 주로 하는 일

사업체(직장) 내에서 조사대상자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사업체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업체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명시**

예) 도매,소매는 물론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품명도 명시해야 함

※ 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액)가 가장 큰 활동으로 분류

<종사상 지위>

20 지난주의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임금근로자

1. 상용근로자
2. 임시근로자
3. 일용근로자

→ (21 번으로)

◆ 비임금근로자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24 번으로)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25 번으로)
6. 무급가족종사자 → (*질문 끝)

종사상 지위 * 임금근로자

일한 사람이 직무를 수행한 직장(일)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문항

◇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구분 기준

①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및 1년 초과하면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 1년 미만이면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이면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하여 고용된 경우도 고용계약 기간에 준하여 판단함
 - ▶ 사업완료의 필요기간에 따라 1년 이상은 상용근로자,
1년 미만은 임시 또는 일용근로자로 각각 구분

- 동일업체에 1년이상 근무(계약기간이 아님)한 경우라도 고용계약이 처음부터 임시 또는 일용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우선하여 임시 또는 일용으로 분류

- ▶ 근속기간과 계약기간을 혼동하지 말 것. 계약기간은 근속기간이 아님

☞ **응답자가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전에 '임시로 다닌다' 라고 대답한 경우라도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파악**

②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분류

- * 총 고용예상기간은 임금근로자를 세분하는 기준이 아님에 유의
-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하여 입사한 사람으로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을 적용 받는 자 또는 퇴직금 및 상여금 등 각종 수당 수혜자는 **상용근로자**로 분류

7. 조사 관리

7-1 현장조사 관리 체계 및 방법

- 조사체계: 지방통계청(사무소)에서 조사 관리



- 현장조사 방법: 면접조사와 전자조사로 구별

가. 면접조사

-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5조(현장조사 시 유의사항) 준수
- 면접을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
- 신규조사대상처인 경우 협조공문 제시
- 가능한 응답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
- 기타 불필요한 질문이나 행동 금지

나. 전자조사

- 전자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준비조사 기간에 조사구(가구) 관리와 보조조사표 배부를 위해 가구 방문
- 가구전출이나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동내역을 나라통계시스템에 반영
- 가구변동사항(명부정리), 인적사항, 산업·직업분류, 종사상지위 항목은 입력자료 확인

7-2 현장조사 관리자의 역할

- 조사 직원에 대한 멘토 역할 수행
 - 신규 직원 지침 교육, 불응사업체 현장 방문 설득 지원
 - 조사표 내검 지도 및 착오 조사표 수정 보완
 -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주요항목 착오 등 확인

7-3 실사지도 및 지도 점검

- 매년 통계청 조사지원과에서 조사현장에 대한 상시점검체계 운영
 - 현장조사 직원의 정확하고 성실한 조사수행 유도
 - 통계조사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조사오류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으로 조사의 정확성 제고

8. 조사 질의응답 체계

8-1 조사원 조사 관련 질의 응답 체계 및 운영방법

- 질의응답은 조사 입력시스템(나라통계시스템)에서 운용
 - 응답자 및 조사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도입
 - 본청담당자가 지침서 및 사례집에 근거해 신속한 답변

8-2 주요 질의응답·오류사례 축적 및 관리방법

- 실시간 질의내용을 시스템에 공유·제공
 - 주요 질의응답 내용, 착오 및 조치방법, 경제활동상태 변동사항 등 질의 응답

9. 조사(또는 응답) 대상

□ 적격 응답자의 지위 및 지정 이유

- (적격 응답자) 전국 36,000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5세이상 가구원
 - ※ 제외자: 군인(직업군인, 상근예비역 포함), 사회복지무요원 등
- (지정 이유) 근로기준법 제64조 최저 근로연령인 15세를 고용통계 대상인구 하한연령으로 정함

□ 대리응답 허용여부와 허용하는 경우 사유

- 가구원마다 개별적으로 직접 면접조사가 원칙이나, 직접 면접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가구의 책임있는 응답자를 선정하여 조사
 - 비혈연관계 등 동거인에 대한 조사는 가급적 본인을 면접 직접조사
 - 응답자는 가구내용을 가장 잘 아는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등을 선정
 - 책임있는 응답자를 면담하기가 극히 어려운 경우 부득이 전화조사를 실시하거나 자기기입식으로 조사
 - 외국인 가구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인구 외국어 안내장과 조사표를 활용하여 조사

10. 무응답 대처

□ 무응답의 대처방법

- 단위무응답에 해당하는 가구원 불응 및 항목 불응은 인정하지 않음
 - 가구원 불응이 발생하면 대상가구를 불응처리하며 전체조사 운영지침 제17조(조사불응 등에 대처)에 따라 불응대상처 관리
 - 응답가구 부재로 인해 해당 월에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도 전자조사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
- 3개월 이상 부재이거나 3개월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장기부재로 간주하여 전출처리
- 항목무응답 없음

11. 표본대체

□ 단위무응답(불응, 부재 등)에 따른 표본대체 허용 여부

- 단위무응답(불응, 부재 등)에 따른 표본대체는 허용지 않지만, 표본조사구 내 가구수가 과소한 경우 조사구 대체 및 조사구역 조정을 통해 유효표본을 확보

12. 사후조사

□ 모니터링 실시 여부

- 현장조사 품질평가를 위한 전화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항목(3개)
 - 방문 및 응답여부, 경황상태 재질의, 필수품 지급 인지 관련 사항
- 추진결과: '23년 정확도 99.8%

IV. 통계처리 및 분석

1. 자료코딩

□ 자료코드 체계

- (1단계) 조사설계서 작성
 - 가구명부, 가구원명부, 조사표 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
 - 부분 항목척도별 내용 및 범위를 파악하여 입력순서에 따라 작성
- (2단계) 조사설계서에 기반한 입력체계 시스템에 구성

2. 자료입력

2-1 전산입력 방법

- 가구조사가 완료되면 경찰 입력(나라통계)시스템에 접속하여 조사표 내용을 입력

2-2 입력오류 검출 방법

- 입력 및 내검 시스템 연계
 - 입력, 저장, 입력완료된 자료와 자료 사이의 논리·연관성 내검이 순차적으로 적용
 - 내검 관련 각종 규칙들이 경찰 입력시스템 내 내장, 자동으로 적용되어 오류 확인

2-3 자료입력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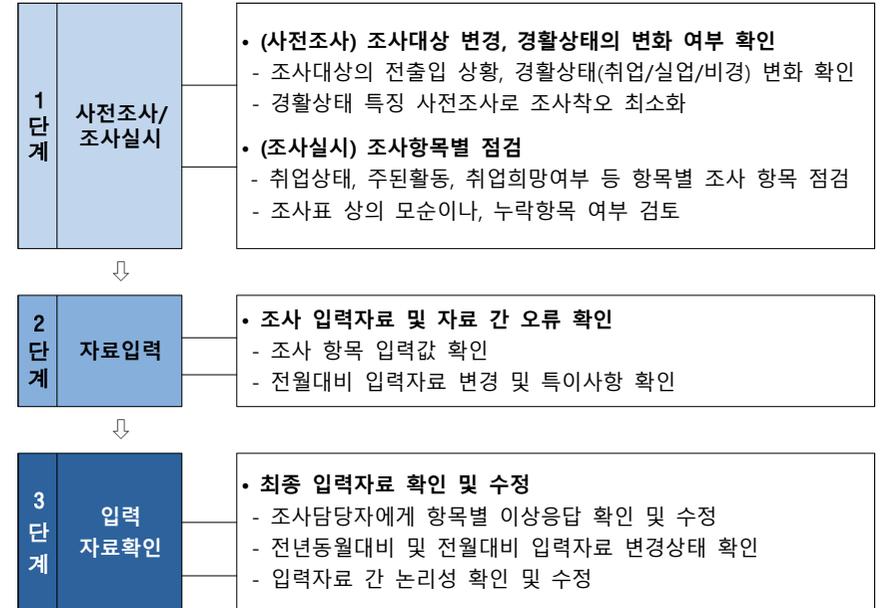
- 자료입력 및 내검 교육 실시(매월)
 - 현장 조사직원 대상으로 입력 및 내검 교육 실시
- 통계교육원 e러닝센터에서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연중 상시 교육)
 - 현장 조사직원 대상으로 조사지침(자료입력 포함) 교육 실시

3. 자료내검

3-1 자료내검의 제반 단계, 방법, 오류자료 처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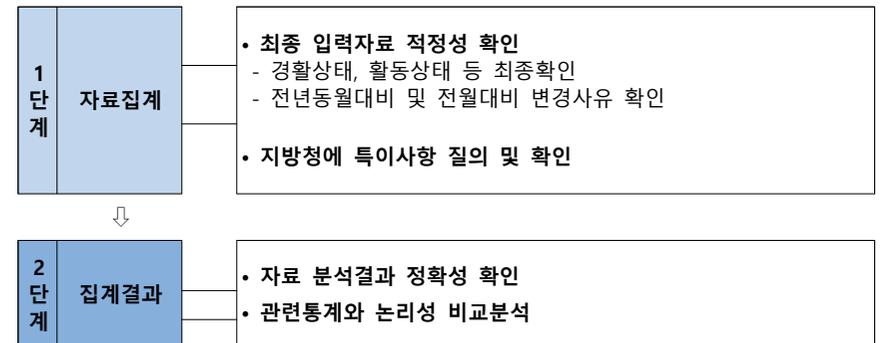
- 현장조사, 입력 부문 : 지방청(사무소) 조사담당자

< 현장조사 내검 및 오류 처리단계 >



- 자료처리 부문 : 본청담당자

< 자료처리 내검 및 오류 처리단계 >



4. 가중치 조정

□ 가중치 적용 방법

- 승수 적용: 모집단의 보조 정보(성, 시도, 동읍면부, 연령별 추계인구)를 활용하여 승수를 적용한 비추정방법(Ratio Estimation Method)에 의함
- 설계가중값: 표본가구에 대한 설계가중값(design weight)은 전국에서 표본조사구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의 역수와 각 표본조사구 내 가구조사 완료율의 역수를 곱하여 작성

□ 설계 가중값

- 표본추출방법에 의해 설계층 내의 모든 표본의 설계 가중값 동일(자체가중)
- 조사구: 27개 설계층별 확률비례계통추출(가구 수 크기비례)
- 가구: 조사구 내에서 20가구 단순임의추출
- 가구원: 표본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

$$w_{hijk} = \frac{M_h}{n_h M_{hi}} \times \frac{M_{hi}}{m_{hi}} = \frac{M_h}{n_h 20} (= w_h)$$

\uparrow \uparrow
 조사구 가구
 포함확률 포함확률
 역수 역수

- w_{hijk} : h층 i조사구 j가구 k가구원의 설계 가중값
- M_h : h층의 총 가구 수
- M_{hi} : h층 i조사구의 가구 수(크기 척도)
- n_h : h층의 표본 조사구 수
- m_{hi} : 조사구 내 표본 가구 수($m_{hi} = 20$)

□ 사후 가중값

- 표본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인구 특성과 최신 모집단의 분포에 맞게 보정
- 27개 설계층의 성·연령 그룹별 현재인구 벤치마크, 총 702개 사후층

$$w_{hijk}^{ps} = w_{hijk} \times \frac{X_{h,p}}{\hat{X}_{h,p}}$$

- w_{hijk}^{ps} : h층 i조사구 j가구 k가구원의 사후 가중값
- X : 현재인구(벤치마크 모수)
- \hat{X} : 응답한 표본의 설계 가중값(w_{hijk})의 합
- p : 사후층, 성 및 연령 그룹(5세 단위)

□ 사후가중치 조정

- 표본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인구 특성과 최신 모집단의 분포에 맞게 보정
- 27개 설계층의 성·연령 그룹별 현재인구 벤치마크, 총 702개 사후층

$$w_{hijk}^{ps} = w_{hijk} \times \frac{X_{h,p}}{\hat{X}_{h,p}}$$

- w_{hijk}^{ps} : h층 i조사구 j가구 k가구원의 사후 가중값
- X : 현재인구(벤치마크 모수)
- \hat{X} : 응답한 표본의 설계 가중값(w_{hijk})의 합
- p : 사후층, 성 및 연령 그룹(5세 단위)

5. 통계추정 산출식 및 내용

□ 분산, 표준오차 등의 추정 방법(월간/연간으로 구분)

<월간 추정>

- 총계 추정

- 사후 가중값을 이용한 사후층화 추정량으로 추정

$$\hat{t}_{y,post} = \sum_{h=1}^H \sum_{i=1}^{n_h} \sum_{j=1}^{20} \sum_{k=1}^{u_j} w_{hijk}^{ps} \times y_{hijk}$$

- w_{hijk}^{ps} : h층 i조사구 j가구 k가구원의 사후 가중값
- y_{hijk} : h층 i조사구 j가구 k가구원의 관측값

- 사후층화 추정량은 가구원 k의 사후층 포함 여부를 나타내는 지시함수들의 벡터를 보조 정보(x)로 사용하는 회귀 추정량으로 표현할 수 있음

$$\hat{t}_{y,reg} = \sum_{h=1}^H w_k \left(\sum_{s_h} \sum_{p=1}^P x_k \tilde{y}_{s_{hp}} + \sum_{s_h} e_k \right)$$

- w_k : h층 i조사구 j가구 k가구원의 설계 가중값 (= w_{hijk})
- s_h : h층의 표본, $\sum_{i=1}^{n_h} \sum_{j=1}^{20} \sum_{k=1}^{u_j}$
- n_h : h층의 표본 조사구 수
- u_j : j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수
- p : 사후층, 성 및 연령 그룹 ($P=26$)
- $x_k = \begin{cases} 1, & k \in s_p \\ 0, & k \notin s_p \end{cases}$: 보조 정보(p사후층 여부)
- $e_k = y_k - \hat{y}_k = y_k - \tilde{y}_{s_{hp}}$: 표본 잔차
- $\hat{y}_k = x_k \hat{B}_{hp}$: 예측값
- $\hat{B}_{hp} = \frac{\sum_{s_{hp}} w_k \times y_k}{\sum_{s_{hp}} w_k} = \tilde{y}_{s_{hp}}$: h층, p사후층의 회귀계수 추정량

※ 회귀 추정량은 근사적으로 불편성을 만족하는 추정량으로 보조 정보가 관심 변수(y)와 선형관계에 있을 때 불편추정량보다 분산이 작아지므로, 분산은 회귀 추정량에 대한 선형근사 분산 추정량으로 추정

○ 총계의 분산

- 테일러 전개(taylor expansion)에 근거한 선형근사(linear approximation) 분산 추정방법 사용
- 총계의 회귀 추정량의 분산은 잔차의 분산과 동일하므로 잔차의 분산을 선형근사방법으로 추정
- SAS 9.4의 Proc SurveyReg procedure를 이용하여 추정값 계산

$$\widehat{V}(\hat{t}_{y,reg}) = \sum_{h=1}^H \widehat{V}_h(\hat{t}_{y,reg}) \quad , \quad \widehat{V}_h(\hat{t}_{y,reg}) = \widehat{V}_h(t_e)$$

$$\widehat{V}_h(t_e) = w_k^2 \left[\left(1 - \frac{n_h}{N_h}\right) \frac{n_h}{n_h - 1} \sum_{i=1}^{n_h} (e_{i.} - \bar{e}_h)^2 + \sum_{i=1}^{n_h} \left(\frac{n_h M_{hi}}{M_h}\right) \left(1 - \frac{20}{M_{hi}}\right) \frac{20}{19} \sum_{j=1}^{20} (e_{ij.} - \bar{e}_i)^2 \right]$$

- $e_{i.} = \sum_{j=1}^{20} \sum_{k=1}^{u_i} e_{ijk}$: i조사구의 잔차합
- $\bar{e}_h = \sum_{i=1}^{n_h} e_{i.} / n_h$: h층의 조사구별 잔차합의 평균
- $e_{ij.} = \sum_{k=1}^{u_j} e_{ijk}$: i조사구 내 j가구의 잔차합
- $\bar{e}_i = \sum_{j=1}^{20} e_{ij.} / 20$: i조사구의 가구당 잔차합의 평균
- N_h : h층의 모집단 조사구 수

○ 표준오차(SE) 및 상대표준오차(RSE)

$$\widehat{SE}(\hat{t}_{y,reg}) = \sqrt{\widehat{V}(\hat{t}_{y,reg})}$$

$$\widehat{RSE}(\hat{t}_{y,reg}) = \frac{\widehat{SE}(\hat{t}_{y,reg})}{\hat{t}_{y,reg}} \times 100 (\%)$$

<연간 추정>

○ 총계 추정

$$\hat{t}_{year} = \frac{1}{12} \sum_{m=1}^{12} \hat{t}_m$$

- $\hat{t}_m = \hat{t}_{y,reg}^m$: m월의 총계 추정량

○ 총계의 분산 추정

$$\widehat{V}(\hat{t}_{year}) = \frac{1}{144} \left[\sum_{m=1}^{12} \widehat{V}(\hat{t}_m) + \sum_{m=1}^{12} \sum_{s=1, s \neq m}^{12} \widehat{Cov}(\hat{t}_m, \hat{t}_s) \right]$$

$$\widehat{Cov}(\hat{t}_m, \hat{t}_s) = \rho_{ms} \sqrt{\widehat{Var}(\hat{t}_m) \times \widehat{Var}(\hat{t}_s)}$$

- \hat{t}_m : m월의 총계 추정량
- $\widehat{V}(\hat{t}_m)$: m월 총계의 분산 추정량
- $\widehat{Cov}(\hat{t}_m, \hat{t}_s)$: m, s월 총계 추정량의 공분산
- ρ_{ms} : 자기상관계수(\hat{t}_m 과 \hat{t}_s 의 상관계수)

* 월 추정량의 분산이 $V(\hat{t}_0)$ 로 동일하고 자기상관계수가 ρ 인 AR(1) 모형을 따를 때, 월별 추정량의 공분산은 다음과 같이 근사함, $Cov(\hat{t}_m, \hat{t}_s) \approx \rho^{|s-m|} V(\hat{t}_0)$

○ 표준오차(SE) 및 상대표준오차(RSE)

$$\widehat{SE}(\hat{t}_{year}) = \sqrt{\widehat{V}(\hat{t}_{year})}$$

$$\widehat{RSE}(\hat{t}_{year}) = \frac{\widehat{SE}(\hat{t}_{year})}{\hat{t}_{year}} \times 100 (\%)$$

6. 표본오차 추정 방법 및 결과

□ 분산, 표준오차 등의 추정방법

< 연간과 월간으로 구분하여 추정 >

○ 분산 추정(월간)

- 테일러 전개(taylor expansion)에 근거한 선형근사(linear approximation) 분산추정방법 (SAS 9.3 Proc SurveyReg procedure 이용)
- 총계의 분산 추정

$$\widehat{V}(\hat{t}_{yr}) = \sum_{h=1}^H \widehat{V}_h(\hat{t}_{yr}) \quad , \quad \widehat{V}_h(\hat{t}_{yr}) = \widehat{V}_h(t_e)$$

$$\widehat{V}_h(t_e) = w_k^2 \left[\left(1 - \frac{n_h}{N_h}\right) \frac{n_h}{n_h - 1} \sum_{i=1}^{n_h} (e_i - \bar{e}_h)^2 + \sum_{i=1}^{n_h} \left(\frac{n_h u_i}{u_h}\right) \left(1 - \frac{20}{u_i}\right) \frac{20}{19} \sum_{j=1}^{20} (e_{ij} - \bar{e}_i)^2 \right]$$

- $e_i = \sum_{j=1}^{20} \sum_{k=1}^{n_j} e_k$: i조사구의 잔차합
- $\bar{e}_h = \sum_{i=1}^{n_h} e_i / n_h$: h층의 조사구별 잔차합의 평균
- $e_{ij} = \sum_{k=1}^{n_j} e_k$: i조사구 내 j가구의 잔차합
- $\bar{e}_i = \sum_{j=1}^{20} e_{ij} / 20$: i조사구의 가구당 잔차합의 평균

- 표준오차(SE) 및 상대표준오차(RSE)

$$\widehat{SE}(\hat{t}_{yr}) = \sqrt{\widehat{V}(\hat{t}_{yr})}$$

$$\widehat{RSE}(\hat{t}_{yr}) = \frac{SE(\hat{t}_{yr})}{\hat{t}_{yr}} \times 100 (\%)$$

- 분산 추정(연간)
 - 총계의 분산 추정

$$\widehat{V}(\hat{t}_{year}) = \frac{1}{144} \left[\sum_{t=1}^{12} \widehat{V}(\hat{t}_{post,t}) + \sum_{s=1}^{12} \sum_{t=1, s \neq t}^{12} \widehat{Cov}(\hat{t}_{post,s}, \hat{t}_{post,t}) \right]$$

- 월별 추정량의 공분산 추정

t, s 월 추정량의 공분산

$$Cov(\hat{t}_{post,t}, \hat{t}_{post,s}) = \rho_{st} \sqrt{[Var(\hat{t}_{post,t})][Var(\hat{t}_{post,s})]}$$

$\hat{t}_{post,t}$: t 월의 사후총화추정량
 ρ_{st} : 자기상관계수($\hat{t}_{post,t}$ 와 $\hat{t}_{post,s}$ 의 상관계수)

월 추정량이 자기상관계수가 ρ 인 AR(1) 모형을 따를 때, 근사 공분산은

$$Cov(\hat{t}_{post,t}, \hat{t}_{post,s}) \approx \rho^{|s-t|} Var(\hat{t}_{post,0})$$

- 표준오차(SE) 및 상대표준오차(RSE)

$$\widehat{SE}(\hat{t}_{year}) = \sqrt{\widehat{V}(\hat{t}_{year})}$$

$$\widehat{RSE}(\hat{t}_{year}) = \frac{SE(\hat{t}_{year})}{\hat{t}_{year}} \times 100 (\%)$$

7. 계절조정

7-1 계절조정의 의미 및 적용방법

□ 계절조정의 의미 및 필요성

- 계절조정의 의미
 - 시계열내에 존재하는 1년 주기의 계절요인은 물론 명절, 조업일수 등 규칙적 변동을 통계적으로 추출하여 원계열로부터 제거하는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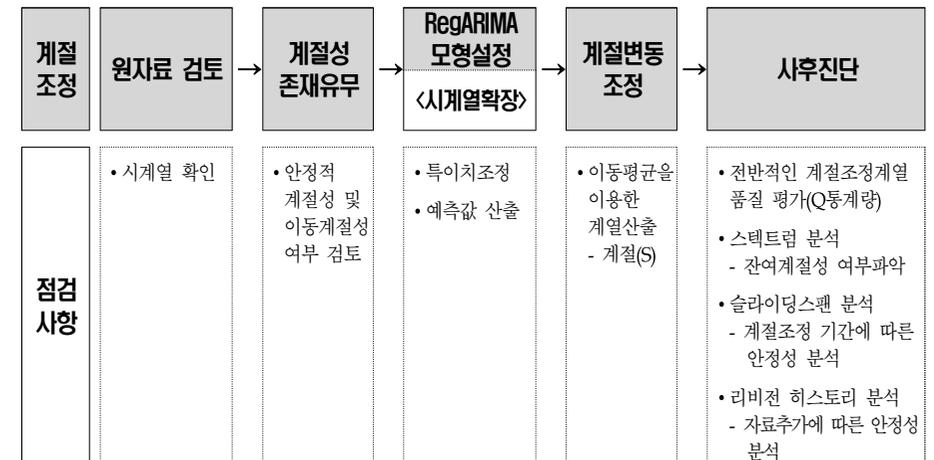
- 계절조정 방법

- 성별×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실업자, 산업별 취업자 등 70개 계열을 직접법으로 작성
- 전체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고용률 등을 비롯한 180개 계열을 간접법(직접법으로 작성된 하위 계절조정계열의 합)으로 작성
 - ※ 간접법으로 작성되는 계열을 포함하여 총250개 계열 생성, 218개 계열 서비스
- 전년도 월자료(12개월)를 추가하여 계절인자를 재작성하고, 과거시점의 계절조정계열을 보정
- 매년 2월에 전년도 월자료를 추가하여 계절인자를 작성(인자에측법)하고 모든 시점의 계절조정계열을 보정
- 계절조정 프로그램
 - 작성 프로그램: X-13-ARIMA 통계패키지

7-2 계절조정 과정 및 내용

□ 계절조정 과정, 과정별 적용방법, 내용 및 산출물

- 계절조정 과정 및 적용방법



- (계절조정 내용 및 이유) 통계조사 결과에 의해 1차적으로 작성되는 원값에는 일반적으로 경기적 요인, 계절요인, 불규칙요인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월비와 같은 단기간의 동향을 파악하기위해 계절요인을 제거하는 과정임
- (계절조정 프로그램) X-13-ARIMA 통계패키지
- Q통계량: 계절조정계열의 품질을 평가하는 통계량
 - 계절조정계열의 품질을 평가하는 통계량 11개 항목이 1보다 작아야함
- 슬라이딩스팬(Sliding spans) 분석: 계절조정 대상기간에 따른 계절요인 안정성 분석
 - span 1~4까지 yes가 나와야함(안정적)
- 리비전 히스토리(Revision history) 분석: 자료의 추가에 따른 계절조정계열의 안정성 분석

7-3 계절조정 시계열 보정

□ 계절조정 시계열 보정

- 시계열 보정 개요 및 방법
 - 주기 및 방법: 매년 2월에 전년도 월자료를 추가하여 계절인자를 작성(인자에측법)하고 모든 시점의 계절조정계열을 보정
 - 이유: 매년 1년간의 월자료가 추가되면 추가된 시계열자료의 특성들이 반영되어 월별계절적 특성치가 변동되고 새로운 계절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반영한 계절조정계열을 작성함

V.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서비스

1. 공표통계 해석방법

1-1 공표되는 주요 분류 수준

경제활동인구조사 총괄	성별/연령별/교육정도별/시도별/성연령별/성교육정도별/시도성별/시도연령별/시도교육정도별/고용보조지표
계절조정 경제활동인구	연령별/산업별/직업별/중사상지위별
취업자	중사상지위별/취업시간별/성연령별/성교육정도별/성중사상지위별/성취업시간별/시도성별/시도연령별/시도교육정도별/산업별/직업별 등
실업자	성연령별/성교육정도별/시도성별/연령교육정도별/성별취업경험별 등
실업률	성연령별/성교육정도별/시도성별/연령교육정도별/시도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성활동상태별/시도활동상태별/연령활동상태별성별구직단념자/성별인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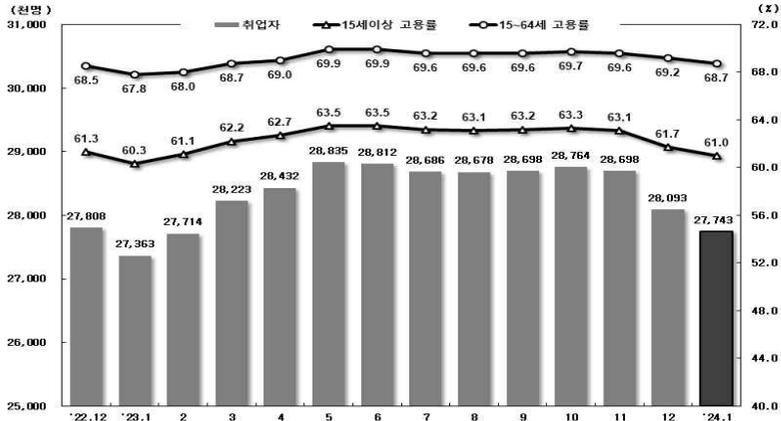
1-2 주요 통계표 및 그래프

- 2024년 1월 주요 고용동향 지표

< 고용률 추이 >

	'23. 1월	10월	11월	12월	'24. 1월
고용률(%)	60.3	63.3	63.1	61.7	61.0
· 15~64세(OECD비교기준)	67.8	69.7	69.6	69.2	68.7
· 15~29세(청년층)	46.1	46.4	46.3	46.0	46.3
취업자(만명, 전년동월대비증감)	41.1	34.6	27.7	28.5	38.0
· 15~64세(OECD비교기준)	13.0	9.7	4.5	6.3	10.0
· 15~29세(청년층)	-5.1	-8.2	-6.7	-7.4	-8.5
인구(만명, 전년동월대비증감)	15.2	15.0	15.9	17.3	16.2
· 15~64세(OECD비교기준)	-27.7	-28.6	-28.6	-27.8	-29.9
· 15~29세(청년층)	-18.9	-17.6	-17.4	-16.8	-21.8

< 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



1-3 자료이용 시 주의사항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십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국제노동기구(ILO)가 고용통계기준을 개정(2013년 10월)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영하고 있음
 - '일하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노동력'을 의미하는 고용보조지표는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것으로 실업률과 다른 개념이며, 고용시장 분석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
 - 고용보조지표 작성을 위해 구직단념자 일부 조건인 취업희망과 취업가능성의 개념이 확대·변경되었으므로 2014년 이전 자료와 비교시 유의
 - 취업자 중 무급가족종사자 범위가 확장되어 '18시간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1시간 무급가족종사자'기준의 주요 고용현황을 2015년 1월 자료부터 참고지표로 제공
 - 공식 취업자·고용률 등은 현행(18시간무급가족종사자 취업자 기준)과 동일
 - 실업자의 구직기간을 4주로 확정함에 따라 구직기간 1주 실업자는 2014년 12월 자료까지 작성·제공
- 과거시계열(2000.7월~2018.12월) 소급보정 후 공표(2019.2.13일)
 - 경제활동인구조사 모수추정의 근간이 되는 추계인구 작성 방법이 등록센서스 기반으로 변화하고, 과거 시계열도 소급보정 됨
 - 인구통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0.7월~2018.12월(18년 6개월간)간의 소급보정된 모수추정용 인구를 적용하여 새로운 표본가중치를 산출하고, 공표자료(KOSIS, 마이크로데이터 등)를 재작성하여 서비스

2. 조사대상 기간/조사 기준시점과 공표 시기

□ 조사대상시점과 공표시기

- 조사대상기간: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 7일(일요일~월요일)
 - 조사대상기간 중 공휴일이 연속 3일 이상 포함된 경우 조사대상기간을 이전주로 변경
- 조사실시기간: 조사대상월 15일이 포함된 다음주 1주간
- 공표시기: 조사대상월 익월 중순

3. 공표일정

3-1 사전에 공개된 통계공표 일정과 공개 방법

-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에 통계공표 일정 수록

보도자료명	공표일자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4. 1. 10.(수)
2024년 1월 고용동향	2024. 2. 16.(금)*
2024년 2월 고용동향	2024. 3. 13.(수)
2024년 3월 고용동향	2024. 4. 12.(금)*
2024년 4월 고용동향	2024. 5. 17.(금)*
2024년 5월 고용동향	2024. 6. 12.(수)
2024년 6월 고용동향	2024. 7. 10.(수)
2024년 7월 고용동향	2024. 8. 14.(수)
2024년 8월 고용동향	2024. 9. 11.(수)
2024년 9월 고용동향	2024. 10. 16.(수)
2024년 10월 고용동향	2024. 11. 13.(수)
2024년 11월 고용동향	2024. 12. 11.(수)

3-2 통계공표 일정을 작성기관 홈페이지에 예고

- 통계청 홈페이지에 공표일정 수록
 - 통계청(kostat.go.kr) -> 새소식 -> 보도계획

3-3 예고된 통계 공표일정 준수

- 사전 공개된 공표일정과 실제 공표시기: 일치

4.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4-1 통계의 개념 동일 여부

-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에 맞춰 일관된 통계의 개념을 적용중

4-2 분류체계 동일 여부

- 현재 사용되는 산업/직업분류와 동일한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조사하고 있음

□ 한국표준 산업·직업분류 개정에 따른 조사 및 공표

산업분류		직업분류	
차수(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공표	차수(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공표
5차개정(1984년)	1982~1992년	3차개정(1975년)	1982~1993년
6차개정(1991년)	1992~2000년	4차개정(1993년)	1993~2000년
7차개정(1998년)		5차개정(2000년)	2000~2008년
8차개정(2000년)	2000~2008년	6차개정(2007년)	2004~2017년
9차개정(2007년)	2004~2017년	7차개정(2017년)	2013~
10차개정(2017년)	2013~		

5. 시계열 비교성

□ 고용통계 시계열 보정

- 고용통계 작성의 근간이 되는 추계인구가 등록센서스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고용통계의 과거 시계열 자료도 등록센서스 인구를 적용하여 보정·공표(2018. 2. 14.)
- (보정방법) 등록센서스 기반의 모수추정용 인구를 고용통계에 적용하여 새로운 표본가중치를 산출하고, 고용통계 공표자료를 재작성
- (보정 기간) 2000년 7월 이후 자료

□ 계절조정 연령구간 세분화

- 15~64세 구간 연령층의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등 지표를 5세 간격으로 세분화하고, 65세이상 구간을 신규 제공(1999년 6월 자료부터 제공)

□ 고령층 연령구간 세분화(1)

- 65세 이상 연령층의 인구, 취업자, 고용률 지표를 '65-69세', '70세이상'으로 세분화하여 공표(2018년 1월 자료부터 제공)

□ 고령층 연령구간 세분화(2)

- 70세 이상 연령층의 인구, 취업자, 고용률 지표를 '70-74세', '75세이상'으로 65세 이상 경활(률), 실업(률), 비경지표를 '65-69세', '70세이상'으로 세분화하여 공표(2023년 1월 자료부터 제공)

6. 국가간 비교성

6-1 동일한 조사목적을 갖는 외국 통계 명칭과 개요

[명칭: 경제활동인구조사]						
구분	한국	국제 권고안 (기구명)	비교가능국가			
			미국	캐나다	일본	EU
통계명	경제활동인구조사	Labor Force Survey (ILO)	Current Population Survey	Labor Force Survey	Labor Force Survey	Labor Force Survey
조사대상	15세 이상 인구	15세 이상 인구	16세 이상 인구	15세 이상 인구	15세 이상 인구	15세 이상 인구
조사에서 제외된 인구	군인, 사회복지무요원, 해외상주 취업(학)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	시설가구내 거주자	시설가구내 거주자, 직업군인	Indian Reserves 지역민, 직업군인, 시설가구내 거주자	외국외교관, 외국군인 및 그 가구원	시설가구내 거주자 (일부국가)
대상주간	매월 15일이 포함된 한주간	매월 15일이 포함된 한주간	매월 12일이 포함된 한주간	매월 15일이 포함된 한주간	매월 말일을 포함한 한주간	회원국마다 상이
현장업무기간	조사대상주간 다음주					
면접대상자	15세이상 모든 가구원	15세이상 모든 가구원	16세이상 모든 가구원	15세이상 모든 가구원	15세이상 모든 가구원	15세이상 모든 가구원
표본규모	36,000가구	국가마다 적정 표본 규모이상	60,000가구	약55,989가구	약 40,000가구	회원국마다 상이
작성주기	매월	매월	매월	매월	매월	3개월단위 (매주 조사)
조사방법	직접 방문조사, 인터넷 응답 (CASI) 등	직접 방문조사, 인터넷응답(CASI), 전화통화조사(CATI) 등	직접 방문조사, 인터넷응답(CASI), 전화통화조사(CATI) 등	직접 방문조사, 인터넷응답(CASI), 전화통화조사(CATI) 등	면접 타계식과 자계식 병행 (OMR, OCR)	직접 방문조사, 인터넷응답(CASI), 전화통화조사(CATI) 등

6-2 동일한 목적을 갖는 외국 통계와의 직접 비교 가능 여부

- OECD 조사기준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만 15세 ~ 64세) 기준 고용률, 청년층(만 15세 ~ 24세) 고용률 등을 작성하고 있어, 해당 항목에 대해 OECD 국가간 비교 가능

6-3 통계자료를 국제 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국제기구명, 제공항목 등

- OECD 지역통계표(Regional Questionnaire): 시도별 성별 취업자수, 경찰인구, 실업자수 등
- OECD 연간노동력통계표(Labor Force Statistics)
 - 성별 산업분류별 취업자수 등
 - 성별 연령별 취업자수, 실업자수, 비경인구 등
- OECD 국민계정통계표
 - 15세이상인구 및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등
 -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수 등

7.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7-1 통계공표 방법 다양화

- 보도자료 공표 및 브리핑
 - 보도자료 공표일 기준으로 보도자료 결과 공개
 - 경로: 통계청 홈페이지(<https://kostat.go.kr>) > 새소식 > 보도자료 > 고용·노동 > 경제활동인구조사
 - 매월 보도자료 공표 시 오전 9시에 주요 내용 위주로 브리핑 실시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s://kosis.kr>)를 통한 통계표 제공
 - 마이크로데이터 홈페이지(<https://mdis.kostat.go.kr>)에 원시자료제공(익일)

7-2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 제공 여부

- 통계표 및 통계설명자료 등 제공 중
 - 경로: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s://kosis.kr>)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노동 > 경제활동인구조사

8. 통계설명자료 제공

- 통계설명자료 DB: <http://meta.narastat.kr>
 - 주제별 설명자료>노동>경제활동인구조사

9.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9-1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여부 및 방법

- 매월 공표일 다음날 오후 2시 공공용 마이크로데이터제공(<http://mdis.kostat.go.kr>)
 - 데이터이용>추출·다운로드>추출을 통해 무료로 서비스 이용
- 제공 소요시간
 - 공공용: MDIS에 접속, 회원가입 후 사용 시 즉시 제공
 - 인가용: 신청서 접수 후 이상 없는 경우 보통 3~5일 이내 제공
- 자료제공 포맷: 원시자료(엑셀, 텍스트, SAS, SPSS, STATA, R), 설계서/코드집(엑셀), 조사표(PDF)

□ 자료 제공 내역 및 유의사항

- 마이크로데이터는 분석 및 연구목적으로 자료 요청시 제공하되, 개별사항(성명, 주소 등)의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가공하여 제공

□ 자료제공 레이아웃 및 미제공항목 설명

- 제공항목: 경제활동상태구분, 조사년월, 성별 등 60개 항목
- 미제공항목: 사무소, 조사구번호, 구역번호 등 31개 항목

- 미제공 사유: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항목 중 사무소, 조사구번호, 구역번호 등 31개 조사항목은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데, 이는 자료처리 및 집계를 위한 내부분석 목적이 주된 사유임.

- 사무소, 조사구번호 등을 비식별화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 및 직장 등을 추정할 수 있어 비밀보호가 어려울 수 있음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코드집>

연번	주석	코드	코드의미 및 단위	길이	타입		
1	동부읍면부코드	1	동부	1	Y		
		2	읍면부	1	Y		
		2	가구주관계코드	1	가구주	1	Y
				2	배우자	1	Y
				3	미혼자녀	1	Y
				4	기혼자녀	1	Y
				5	손자녀	1	Y
		6	부모(장인,장모)	1	Y		
		7	조부모	1	Y		
8	미혼형제자매	1	Y				
9	기타	1	Y				
3	성별코드	1	남자	1	Y		
		2	여자	1	Y		
4	출생연도			4	T		
5	교육정도_학력구분코드	0	무학	1	Y		
		1	초등학교	1	Y		
		2	중학교	1	Y		
		3	고등학교	1	Y		
		4	전문대(초급대,2.3년제 대학포함)	1	Y		
		5	대학교(4년제 대학포함)	1	Y		
		6	대학원(석사)	1	Y		
7	대학원(박사)	1	Y				
6	교육정도_계열코드	001	인문계열	3	Y		
		002	예술,체육계열	3	Y		
		003	상농공수산계열 등	3	Y		
		010	교육	3	Y		
		021	예술	3	Y		
		022	인문학	3	Y		
		030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	3	Y		
		040	경영, 행정 및 법학	3	Y		
		050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3	Y		
		060	정보통신기술	3	Y		
070	공학, 제조 및 건설	3	Y				
080	농림어업 및 수의학	3	Y				

		091	보건	3	Y
		092	복지	3	Y
		100	서비스	3	Y
7	교육정도_수학구분코드	1	졸업	1	Y
		2	재학	1	Y
		3	중퇴	1	Y
		4	휴학	1	Y
		5	수료	1	Y
8	졸업연도			4	T
9	혼인상태코드	1	미혼	1	Y
		2	유배우	1	Y
		3	사별	1	Y
		4	이혼	1	Y
10	현재일관련사항_지난주수입목적근로여부	1	예	1	Y
		2	아니오	1	Y
11	현재일관련사항_지난주무급가족일근로여부	1	예	1	Y
		2	아니오	1	Y
12	현재일관련사항_지난주일시휴직여부	1	있었음	1	Y
		2	없었음	1	Y
13	현재일관련사항_지난주일시휴직사유코드	1	일시적 병, 사고	1	Y
		2	연가, 휴가	1	Y
		3	교육, 훈련	1	Y
		4	육아	1	Y
		5	가족적이유	1	Y
		6	노사분규	1	Y
		7	사업부진, 조업중단	1	Y
		8	기타()	1	Y
14	현재일관련사항_지난주부업여부	1	있었음	1	Y
		2	없었음	1	Y
15	현재일관련사항_평소1주간36시간미만근무사유코드	1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	1	Y
		2	건강	1	Y
		3	육아	1	Y
		4	가사	1	Y
		5	통학	1	Y
		6	본인이 원해서	1	Y
		7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1	Y
		8	기타()	1	Y
16	현재일관련사항_주업실제취업시간수			3	N
17	현재일관련사항_지난주부업근무시간수			3	N

18	현재일관련사항_총실제취업시간수			3	N
19	현재일관련사항_지난주총근로시간구분코드	1	1~17시간 무급가족종사자	1	Y
		2	0~35시간	1	Y
		3	36시간이상	1	Y
20	현재일관련사항_지난주36시간미만근무사유코드	01	평소 1주일에 36시간미만 일함	2	Y
		02	일시적 병, 사고	2	Y
		03	일기불순	2	Y
		04	연(휴)가, 공휴일	2	Y
		05	교육, 훈련	2	Y
		06	육아	2	Y
		07	가족적 이유	2	Y
		08	노사분규	2	Y
		09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	2	Y
		10	사업부진, 조업중단	2	Y
		11	기타()	2	Y
21	현재일관련사항_추가취업전직희망코드	1	현재 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	1	Y
		2	현재 보다 다른일도 하고 싶음	1	Y
		3	더 많이 일할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	1	Y
		4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1	Y
22	현재일관련사항_추가취업가능성여부	1	예	1	Y
		2	아니오	1	Y
23	현재일관련사항_지난4주내추가취업구직여부	1	있었음	1	Y
		2	없었음	1	Y
24	현재일관련사항_10차산업대분류코드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1	Y
		B	광업(05~08)	1	Y
		C	제조업(10~34)	1	Y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1	Y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 ~ 39)	1	Y
		F	건설업(41~42)	1	Y
		G	도매 및 소매업(45~47)	1	Y
		H	운수 및 창고업(49~52)	1	Y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1	Y
		J	정보통신업(58~63)	1	Y
		K	금융 및 보험업(64~66)	1	Y
		L	부동산업(68)	1	Y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1	Y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1	Y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1	Y
		P	교육 서비스업(85)	1	Y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1	Y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1	Y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1	Y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1	Y
		U	국제 및 외국기관(99)	1	Y
25	현재일관련사항_종사자규모코드	1	1-4명	1	Y
		2	5-9명	1	Y
		3	10-29명	1	Y
		4	30-99명	1	Y
		5	100-299명	1	Y
		6	300명이상	1	Y
26	현재일관련사항_7차직업대분류코드	1	관리자	1	Y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	Y
		3	사무 종사자	1	Y
		4	서비스 종사자	1	Y
		5	판매 종사자	1	Y
		6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1	Y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	Y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	Y
		9	단순노무 종사자	1	Y
27	현재일관련사항_종사상시위코드	1	상용근로자	1	Y
		2	임시근로자	1	Y
		3	일용근로자	1	Y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	Y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	Y
		6	무급가족종사자	1	Y
28	현재일관련사항_직장시작연월			6	T
29	현재일관련사항_고용계약기간정함여부	1	정했음	1	Y
		2	정하지 않았음	1	Y
30	현재일관련사항_고용계약기간코드	1	1개월 미만	1	Y

		2	1개월~6개월 미만	1	Y
		3	6개월~1년 미만	1	Y
		4	1년	1	Y
		5	1년 초과~2년	1	Y
		6	2년 초과~3년	1	Y
		7	3년 초과	1	Y
31	구직사항_지난4주내구직여부	1	있었음	1	Y
		2	없었음	1	Y
32	구직사항_취업가능성유무	1	있었음	1	Y
		2	없었음	1	Y
33	구직사항_주요구직방법1코드	1	시험응시	1	Y
		2	구직등록,구직응모(주로 공공,민간알선기관)	1	Y
		3	사업체 문의,방문,원서제출	1	Y
		4	자영업 준비	1	Y
		5	친척, 친구, 동료에게 소개 부탁	1	Y
		6	기타	1	Y
34	구직사항_주요구직방법2코드	1	시험응시	1	Y
		2	구직등록,구직응모(주로 공공,민간알선기관)	1	Y
		3	사업체 문의,방문,원서제출	1	Y
		4	자영업 준비	1	Y
		5	친척, 친구, 동료에게 소개 부탁	1	Y
		6	기타	1	Y
35	구직사항_주요구직경로1코드	1	공공 직업알선기관	1	Y
		2	민간 직업알선기관	1	Y
		3	대중매체(신문,잡지,광고 등)	1	Y
		4	학교, 학원 추천	1	Y
		5	친척, 친구, 동료	1	Y
		6	기타()	1	Y
36	구직사항_주요구직경로2코드	1	공공 직업알선기관	1	Y
		2	민간 직업알선기관	1	Y
		3	대중매체(신문,잡지,광고 등)	1	Y
		4	학교, 학원 추천	1	Y
		5	친척, 친구, 동료	1	Y
		6	기타()	1	Y
37	구직사항_구직활동기간			2	N
38	비경제활동구직의사여부	1	예	1	Y
		2	아니오	1	Y

39	비경제활동취업가능성유무	1	있었음	1	Y
		2	없었음	1	Y
40	기타활동사항_4주내비구직사유코드	01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것 같아서	2	Y
		02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것 같아서	2	Y
		03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것 같아서	2	Y
		04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2	Y
		05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것 같아서	2	Y
		06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2	Y
		07	육아	2	Y
		08	가사	2	Y
		09	통학	2	Y
		10	심신장애	2	Y
		11	기타()	2	Y
41	기타활동사항_지난1년내구직활동유무	1	있었음	1	Y
		2	없었음	1	Y
42	기타활동사항_지난주주요활동상태코드	01	육아	2	Y
		02	가사	2	Y
		03	정규교육기관 통학	2	Y
		04	입시학원 통학	2	Y
		05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	2	Y
		06	취업준비	2	Y
		07	진학준비	2	Y
		08	연로	2	Y
		09	심신장애	2	Y
		10	군입대 대기	2	Y
		11	쉬었음	2	Y
		12	기타	2	Y
43	이전직장사항_전직유무	1	있었음	1	Y
		2	없었음	1	Y
44	이전직장사항_퇴직기간1년미만여부	1	1년 미만	1	Y
		2	1년 이상	1	Y
45	이전직장사항_1년미만퇴직연월			6	T
46	이전직장사항_이직사유코드	01	개인, 가족관련 이유	2	Y

		02	육아	2	Y
		03	가사	2	Y
		04	심신장애	2	Y
		05	정년퇴직, 연로	2	Y
		06	작업여건(시간, 보수등) 불만족	2	Y
		07	직장의 휴업, 폐업	2	Y
		08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2	Y
		09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2	Y
		10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	2	Y
		11	기타()	2	Y
47	이전직장사항_10차산업대분류코드	A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1	Y
		B	광업(05~08)	1	Y
		C	제조업(10~34)	1	Y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35)	1	Y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 ~ 39)	1	Y
		F	건설업(41~42)	1	Y
		G	도매 및 소매업(45~47)	1	Y
		H	운수 및 창고업(49~52)	1	Y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1	Y
		J	정보통신업(58~63)	1	Y
		K	금융 및 보험업(64~66)	1	Y
		L	부동산업(68)	1	Y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1	Y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1	Y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1	Y
		P	교육 서비스업(85)	1	Y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1	Y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1	Y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1	Y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1	Y
		U	국제 및 외국기관(99)	1	Y

48	이전직장사항_종사자규모코드	1	1-4명	1	Y
		2	5-9명	1	Y
		3	10-29명	1	Y
		4	30-99명	1	Y
		5	100-299명	1	Y
		6	300명이상	1	Y
49	이전직장사항_7차직업대분류코드	1	관리자	1	Y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	Y
		3	사무 종사자	1	Y
		4	서비스 종사자	1	Y
		5	판매 종사자	1	Y
		6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1	Y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	Y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	Y
		9	단순노무 종사자	1	Y
50	이전직장사항_종사상지위코드	1	상용근로자	1	Y
		2	임시근로자	1	Y
		3	일용근로자	1	Y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	Y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	Y
		6	무급가족종사자	1	Y
51	조사연월			6	T
52	농가비농가가구분코드	1	농가	1	Y
		2	비농가	1	Y
53	교육정도컨버전코드	1	초졸이하	1	Y
		2	중졸	1	Y
		3	고졸	1	Y
		4	초대졸	1	Y
		5	대졸	1	Y
		6	대학원졸	1	Y
54	만연령			3	N
55	연령5세단위코드	01	15~19세	2	Y
		02	20~24세	2	Y
		03	25~29세	2	Y
		04	30~34세	2	Y
		05	35~39세	2	Y
		06	40~44세	2	Y
		07	45~49세	2	Y
		08	50~54세	2	Y
		09	55~59세	2	Y
		10	60~64세	2	Y
		11	65~69세	2	Y

		12	70~74세	2	Y
		13	75세이상	2	Y
56	가중값			10	N
57	경제활동상태코드	1	취업자	1	Y
		2	실업자	1	Y
		3	비경제활동인구	1	Y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방법

- MDIS(<https://mdis.kostat.kr>)에 접속, 회원가입 후 사용하는 서비스의 신청절차에 따라 이용

< MDIS 서비스 유형 >

서비스 유형		자료제공 수준	수수료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선택하고 PC로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는 서비스	개체식별정보, 민감변수 등을 제외한 일반 공개용 자료	무료	
인가용 서비스	원격접근 서비스 (RAS)	이용자가 집, 사무실에서 원격접근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만 통계청 승인 하에 반출하는 서비스	공공용 자료보다 제공항목 추가, 항목별 제공 수준 상세화 등 보다 세부적인 자료	유료**
	이용센터 서비스 (RDC)	이용자가 물리적 보안환경이 갖추어진 이용센터에 방문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만 통계청 승인하에 반출하는 서비스	원격접근 자료보다 제공항목 추가, 항목별 제공수준 상세화 및 연계식별정보(암호화 대체기) 등 세부적인 자료	유료**

* 마이크로데이터이용센터(RDC)

- 수도권(국회도서관, 서강대, 서울대 등 7개), 충청권(통계센터 등 3개), 강원권(원주 건강보험공단), 호남권(전북대, 광주통합청사), 영남권(부산통합청사, SW융합테크비즈센터)에 위치

** 데이터용량, 이용기간 등에 따라 수수료 상이

< MDIS 서비스유형별 이용방법 >



- 마이크로데이터 메타파일 제공
 - MDIS에 통계설명자로 외에 파일설계서, 자료 이용시 주의사항, 집계기준 및 용어해설, 조사표 등 메타자료 이용 가능
 - 파일설계서에 코드집을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어 파일설계서로 마이크로데이터의 레이아웃 확인 가능

9-2 마이크로데이터 제공/미제공 관련 내부지침

- 통계청 훈령 제583호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10.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응답자 비밀보호 관련 규정

- (자료수집)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보호
 -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응답자 비밀보호)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8조에 의해 비밀보호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응답자 정보의 비밀엄수
- (자료의 처리 및 보관)
 - 수집된 조사표는 각 사회조사과(또는 사무소)의 지정된 보안캐비닛에 보관하며, 1년 경과 후 문서고로 이관하여 파기 전까지 보관
 -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들은, 제한된 최소한의 인원만 접근 및 조회가 가능하며, 내부 공유시에도 암호화된 파일, 우편 등을 이용하여 보안을 우선으로 함

11.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공표자료 또는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시 응답자 식별가능성 제거를 위한 방법

- 식별 가능 조사항목 및 조치방법

조사항목	조치방법 및 자료제공
조사구 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의 식별이 가능하므로 식별가능한 변수를 모두 제외한 후 제공
생년월일	만나이 변환 및 출생연도 제공

- 결과자료
 - 취업자 등 규모는 보도자료(천명), KOSIS통계표(백명) 단위로 공개
 - 마이크로데이터의 경우 개별사항(성명, 주소 등)의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가공하여 제공

12.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과정의 유실, 유출, 훼손 등 관련 규정

- 자료의 수집
 - 조사는 반드시 교육받은 당사자가 하여야 하며,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모든 내용은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됨(통계법 제33조, 제34조)
 - ※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통계법 제39조)
- 자료의 처리 및 보관
 - 조사된 자료는 자료처리시스템(나라통계시스템)으로 관리하며, 자료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및 위탁운영 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

Ⅶ.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통계 업무 담당 부서명,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 부서명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경제활동인구조사 담당자

담당업무	
1	경제활동인구 업무 총괄
2	
3	조사 기획, 자료처리, 분석, 통계공표, 통계서비스 제공 등
4	
5	

2.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2-1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인구위기대응TF(기재부, 고용부) 등 대내외적인 수요에 따라 고령층 연령 세분화 공표를 위한 표본확대(35,000->36,000가구)
- 고령층 등 통계 세분화 수요 반영과 고용상황의 다각적 해석을 위해 계절조정통계 세분화 및 확대(계절조정 연령 10세단위 -> 5세단위)
- 개정된 중상상지위(2021.12.) 측정을 위해 6개 문항 추가, 2개항목 변경
- (인구,취업자,고용률) 연령층 세분화(70세->70~74세, 75세 이상)
- 고용보조지표 계절조정계열 추가(전체, 청년층)

2-2 과거 통계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이행내역

□ 경제활동인구조사 정기/자체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과제 이행 내역

- 정기진단(2019): 국제노동기구 권고사항 변경에 대한 반영
 - 新중상상지위 측정을 위한 조사표 변경 승인(승인일 : 2022. 7. 6)
- 자체진단(2021): 조사원(보고) 교육 실시 및 개선
 - 조사관련 질의응답을 위한 연락처를 조사 지침서에 포함하여 반영
- 자체진단(2021): 고용상황의 다각적 분석을 위한 고용통계 계절조정 강화
 - 계절조정계열 설명 확대: 그래프 변동에 대한 설명추가, 계절조정 15-64세 고용률 추가
 - 요약통계표 : 계절조정 고용률(15세 이상, 15-64세) 추가
 - 영문보도자료 : 요약표, 그래프에 계절조정 고용률 추가
 - 자주하는 질문 수정 : 계절조정 관련 설명내용 보완(2022년 1월 보도자료부터 반영)
- 자체진단(2022): 신중상상지위 분류 관련 사례 발굴
 - 지침서 및 사례집에 수록된 신중상상지위 관련 내용들을 점검하고 수정 (2024년 지침서 및 사례집 반영)